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0240

2010년 8 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潛谷 金堉의 變通論과 大同法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정 진 우

潛谷 金堉의 變通論과 大同法

Jamgok Kim Yuk's Reformist Theory and Daedongbeop

2010년 8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정 진 우

潛谷 金堉의 變通論과 大同法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정 진 우

정진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진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숙 인

2010년 6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目　　次

ABSTRACT····· 2

Ⅰ. 머리말····· 4

Ⅱ. 김육사상의 연원과 안민본위론····· 8

1. 관력과 저술····· 8

2. 가풍과 사우관계····· 13

3. 김육의 경험적 務實指向과 실천····· 19

Ⅲ. 김육의 '안민변통론'과 대동법····· 25

1. 대동법 확대 실시와 김육의 역할····· 25

2. 김육의 안민본위 변통론····· 33

3. 대동법의 성격과 조선후기 경세론의 분화····· 38

Ⅳ. 맺음말····· 48

참고문헌····· 52

Abstract

Jamgok Kim Yuk's Reformist Theory and Daedongbeop
Author: Jin-Woo, Jong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Jong-Bum, Lee

Jamgok Kim Yuk is a representative scholar and official of the seventeenth century.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financial stability of society and happiness of the people in Joseon society with national crises due to harmful effects of two invasions of western powers.

At that time, national finance collapsed and farmers's life got ruined because of subsequent wars of Imjinawaeran, Jeongmyohoran and Byeongjahoran. Furthermore, evil effects of tax systems were imposed on them, which caused more severe crises to the society. The tax system which started from a concept of giving specialities of each region to kings became a large outcome resource which accounted for 60% of national income. However, as evils of Bangnap System which was derived from in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storage grew severe, farmers' life got harsh and difficult.

The efforts to correct such evils was initiated by Jo Gwang Jo in the sixteenth century, but it was not realized. Then as Daedongbeop

was implemented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it was publicly discussed that tax system had to be developed. In 1608, Daedongbeop which was once implemented in Gyeonggido for one year was a fair and effective system for which payment was given in rice and cloth according to size of the estate. It was profitable for national finance and could reduce burden of farmers. However, the nobility opposed against the tax system based on size of estates as it was disadvantageous to them. Because of such opposition, it took 100 years to implement it nationwide from 1608 to 1708.

Kim Yuk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its establishment by suggesting expanded implementation of Daedongbeop with firm intention and strong momentum. In spit of much criticism and opposition, he continued to endeavor for national reorganization in a basis of stability of people….

Ⅰ. 머리말

17세기 대표적 정치관료 潛谷 金堉은 兩亂의 폐해로 위기에 봉착한 조선국가의 再造와 安民富國을 위하여 제도개혁을 추진한 變通論者로 유명한 경세학인이었다.

당시 조선사회는 壬辰倭亂 · 丁卯胡亂 · 丙子胡亂의 연이은 戰亂으로 국가 재정은 고갈되고 농민생활은 황폐해져 갔다. 이때 지방의 현물을 바치는 '任土作貢'과 '本色上納'의 방식으로 운영된 貢納制度의 폐단은 심각하였다. 공물은 국가 수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으나 수송과 저장의 불편, 그리고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부과함으로서 비롯된 防納으로 國用의 충실과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반듯이 개혁하여야 하였다.

공납제 개혁론은 趙光祖(1482~1519)를 비롯한 기묘사림이 국용의 재감과 공물의 개정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선조 치세 유희춘이 부분적으로 전라도에서 시행한 바 있고, 이이는 收米法으로 제안하였다. 주로 개혁파 사림관료가 제안한 이러한 개혁론은 쉽게 수용될 수 없었다. 가호를 대상으로 부과한 공물을 토지를 대상으로 징수하게 되면 양반지주나 부상대고에게는 유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하여 그동안 토지 소유여부를 떠나 공물의 징수대상이 되었던 많은 농가는 환영할 터였다.

이렇듯 공물의 부과를 가호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단순한 제도개혁의 차원을 넘어 사회구성의 전반의 이해관계와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이 파탄하고 이후에도 북방 정세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공납제의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17세기초에 공론화되었다. 즉 光海君 즉위년(1608년)의 경기도에 실시된 대동법이었다.

대동법은 토지 結數에 따라 現物 대신 米·布로 납부하므로 그동안 토지가 없는 농민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재정에도 이익이 되었다. 그러나 결수를 기준으로 하는 납부 방식은 대토지소유자인 토호양반이나 관료지주의 반대가 극심했다. 광해군 즉위년(1608)에 시작된 대동법이 숙종34년(1708) 전국적으로 실시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至難하였던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과정에서 김육의 역할은 큰 것이었다. 여기에는 정치관인으로서 추진력과 능력도 필요하였지만 安民에의 신념이 바탕이 된 변통·경세사상이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김육은 의리와 명분을 제일의의 가치로 삼는 주자성리학에 충실하였지만 그는 현실문제에 있어서는 實理를 중시하며 부국과 안민을 위한 제도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따라서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김육에 주목하였던 것인데, 이로서 經世官僚로서의 면모와 그의 경세론과 구체적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1] 또한 붕당정치에서의 위상과 대응 및 정치사상도 밝혀졌으며,[2] 근래에는 가계·가학 및 문학작품에 대한 조망도 이루어졌다.[3]

본고에서는 주자성리학의 의리명분론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金堉이 자신의 사상을 구체적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실현시켰던 대동법 확대 실시의 역사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그것은 공납제 개혁이라는 논의를 넘어 당시 다양한 인물과 사상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함축된 문제이므로 김육을 통해 나타난 당시 사

---

1) 김준태, 「잠곡 김육의 실용적 경세사상 연구」,『儒敎思想硏究』 31, 2001 ; 이헌창, 「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적 업적」, 『문헌과 해석』18, 문헌과해석사, 2002 ; 김세봉, 「金堉의 社會經濟政策연구」, 『史學志』 21, 단국대, 1988; 김준석, 「金堉의 安民經濟思想과大同法」, 『民族文化』 제24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 김호일, 「經世家로서의 金堉」, 『한국학』 21, 중앙대, 1979 ;
원유한, 「潛谷 金堉의 貨幣經濟思想」, 『弘大論叢』 11, 1979 ; 이근호, 「효종대 집권서인의 부세제도 변통론 정국의 추이와 관련하여」『북악사론』 3, 1993 ; 이정철 「丁卯胡亂 後 仁祖代 貢物變通 논의」『史叢』, 2003.

2) 김윤곤, 「大同法의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背景」, 『大同文化硏究』 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1 ; 박병련, 「朝鮮朝 務實論의 전개양상과 金堉의 政治思想」『잠곡 김육연구』, 태학사, 2007 ; 배우성, 「17세기 정책논의구조와 김육의 사회경제정책관」, 『민족문화』 24, 민족문화추진회, 2001 및 「사회경제정책 논의의 정치적 성격」,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2003 ; 우경섭, 「潛谷 金堉의 學風과 時勢認識」, 『韓國文化』 3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 ; 이남복, 「金堉의 思想과 그 歷史的位置」, 『史學志』14, 단국대 1980 및 「국역 잠곡유고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1998 ; 이영춘 「17세기 朝鮮 정치사에서 金堉과 그의 가문」『잠곡 김육연구』 태학사, 2007 및 정만조 「17세기 중반 漢黨의 政治活動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9 ; 정연식, 「17세기 김육의 淸 문물 도입론」『인문논총』 11, 2002 및 「湖西大同節目 서문에 보이는 金堉의 공리주의적 사고」, 『인문논총』 16, 2007.

3) 남윤수, 「潛谷 金堉의 集杜詩考」『중어중문학』 제4집, 1984 ; 남은경, 「潛谷 金堉文學의 特性硏究」, 『한문교육연구』 제24집, 2005 ; 이영춘, 「丙子胡亂 전후의 朝鮮·明·淸 관계와 金堉의 『朝京日錄』」『朝鮮時代史學報』 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 이종묵, 「潛谷 金堉의 삶과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제9집, 2005 ; 정선용, 「潛谷詩에 나타난 憂國과 愛民意識」『민족문화』제24집, 민족문화추진회, 2007.

회변동에서 요구되는 변통사상의 성격을 가늠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가학 전통과 사승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상적 연원이 김육에 이르러 안민경세론으로 변통론으로 수렴되었던 사실과, 공납제 개혁논의의 주도하고 마침내 실현한 김육의 사상적 역정을 밝히고자 함이다.

제3장에서는 대동법 논의와 실시 과정에 나타난 김육의 경세관료로서 진면목을 살폈다. 김육은 자신이 경학과 사학은 물론 주자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민생과 실용 방면에서 보다 업적을 냈다. 그러면서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입안하고 공론하며 실현하였다. 대동법의 확대실시 또한 이러한 산물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동법 확대실시가 부세제도의 개혁의 차원을 넘어선 당대 조선국가의 방향의 문제와 관련되는 歷史像을 획득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김육 자신도 안민을 평생 화두로 삼고 대동법 확대 실시에 매진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대동법 확대실시로 귀결되는 김육의 경세사상이나 변통론의 성격에 대하여 천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연구는 김육이 안민을 목표로 務實思想을 정책화한 경세관료로 이해하며 그 결정이 대동법의 확대실시라는 데에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호서대동법의 추진 과정에서 안민보다는 부국으로 사상적 관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고, 또한 김육이 제도변통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전라대동법의 실시에 즈음해서는 성의정심의 수기론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시 의리명분론을 주도하는 서인산림과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이해는 구체적 실천과 내면적 사상의 상호관계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상 개혁은 성공보다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설사 성공한 개혁이라도 본래의 의도가 정당했는가? 그 실행과정은 옳았는가? 그리고 초기의 의도대로 구현되었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육이 당대에 실현한 대동법 확대 문제도 이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생의 사명으로 추진한 대동법의 확대 시행은 공납제 개혁이라는 제도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시대의 요청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 변화를 생각하는 변통 개혁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추진하였던 김육의 사상기저는 '先修己後治人'이라는 유학 나아가 주자성리학의 기본이념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가 務實과 변통의 근거로 내세운 안민 또한 공맹 이래 유학이 추구하는 정치의 목표였다. 이러한 점을 결론에서는 분명히 하고 싶다.

Ⅱ. 김육의 사상연원과 안민본위론

1. 관력과 저술

김육은 선조 13년(1580) 서울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己卯八賢의 한 사람인 金湜의 玄孫이다. 그러나 曾祖 德秀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며 祖父 棐는 군자감판관, 아버지 興宇는 참봉으로 지냈다. 어머니 漢陽 趙氏는 縣監 趙希孟의 딸이며 趙崇祖의 손녀였다. 조숭조는 조광조의 實弟였다.

9세 때(1588) 조부의 임지인 평안도 강동에 유배와 있었던 退溪의 제자 芝山 曺好益을 찾아가 처음으로 학문을 수학했다. 15세 때(1594)는 부친을 따라 해주 석담에 피난해 있던 牛溪 成渾을 만나게 된다. 당시 부친 김흥우가 아우 金興悌·金興信 그리고 아들 김육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김흥제와 김육의 시가 매우 좋았다고 하고, 특히 김육은 나이가 열다섯인데 文理가 크게 통하고 시어가 맑고 원만하여 몹시 기이하고 아취가 있으니 奇童이라 할 만하다며 칭찬했다 한다.[4)]

15세(1594) 4월에 부친상을 당한다. 전란 중에는 청주 · 인천 · 안악 · 해주 · 연안 등지를 전전하며 곤궁하게 지냈다. 1598년에 조모상, 2년 후에는 모친상을 당한다. 1602년 상복을 벗고 다음 해 24세 선조36년(1603)부터 매년 과거에 응시하여 1605년에 사마시에 합격했다.

광해군 2년(1610) 31세 성균관 학생으로서 諸生들과 함께 五賢從祀 운동을 벌였고, 다음 해 鄭仁弘이 차자를 올려 晦齋와 退溪를 비난하자, 그는 齋任으로 있으면서 정인홍의 유적 삭제를 주동했다. 이 때문에 광해군이 크게 노해 가장 먼저 의논을 낸 자를 조사해 내어 금고시키라고 명한다. 이에 맞서 유생들은 捲堂을 했다. 때마침 李德馨과 李恒福의 주선으로 위기를 면한다.[5)]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문과에 응시했으나, 복시에서 번번이 낙방했다.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과거에 응시하며 관직에 나가고자 했으므로 정치적 성취동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학문에만 골몰하는 처사적 성향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광해군 5년(1613) 그의 나이 34세 때 癸丑獄事가 일어나고 폐모론이

---

4) 이종묵, 「潛谷 金堉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硏究』 9, 2005, p,297.
5) 『광해군일기』 권40, 3년 4월 18일

제기되자 그는 가평의 잠곡 청덕동으로 은거생활에 들어간다. 가평 회정당에서 살던 김육은 가끔 金尙憲의 石室에 가서 유숙하면서 정치문제를 토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이항복이 폐모론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다.[6] 그리고 얼마 후 역시 폐모론을 반대한 再從祖 金權이 江界로 유배되고 이항복은 北靑으로 유배를 떠났다.[7]

인조 1년(1623)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그는 10년의 은거 끝에 유일로 천거되어 의금부도사에 임명됐다. 다음 해(45세) 1월 李适의 난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음성현감에 임명되었고, 그해 10월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한다. 그해 사간원 정언, 성균관 전적을 지내고 다음 해 병조좌랑겸춘추관기사관, 사헌부지평, 세자시강원사서, 문학, 다음 해 병조정랑 겸 지제교 등을 지냈다.

48세 인조 5년(1627) 丁卯胡亂이 일어나자 세자의 分朝에 종군했다. 그리고 병조정랑으로서 접반사종사관, 도체찰사종사관으로 수행하며 전후처리에 분주했다. 그해 7월 兩西의 事宜에 대해 논하면서 후금의 공격에 대한 대비보다 백성을 안정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8] 이 때문에 인조가 처음에는 국가의 계책을 뒤흔들었다고 책망했다.[9] 그러나 인조는 나중에 김육의 말이 참으로 이치가 있으며, 지난번에 배척했던 것은 사람마다 그를 본받아서 일을 맡은 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가 없게 할까 염려했음을 말한다.[10] 다음 해 홍문록에 올라 시강원겸사서, 홍문관수찬, 교리, 사간원헌납, 이조좌랑 등을 역임했다. 그해 12월에는 소무원종공신에 녹훈된다.

50세 인조 7년(1629) 풍문이 나빴던 김세렴의 통청을 막았다가, 좌의정 김류의 탄핵을 받고 붕당을 조성한다는 죄명으로 나국되어, 문외출송된다.[11] 이때부터 2년간 잠곡에서 은거하다가 1631년 1월에 사면되었고, 그 다음 해 5월에 홍문관 부수찬으로 복직되어 이조정랑, 부응교, 의정부검상, 의정부사인, 세자시강원 보덕 등을 역임했다. 그해 11월에는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용양위 부호군 겸

---

6) 『국역 잠곡유고』 권2, 詩, 「石室與淸陰同宿 聞白沙獻議」
7) 『국역 잠곡유고』 권2, 詩, 「奉送白沙相公謫北靑」
8) 『국역 잠곡유고』 권4, 疏箚, 「論兩西事宜疏」
9) 『인조실록』권17, 5년 8월 1일
10) 이종묵, 「潛谷 金堉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硏究』 9, 2005, p,306.
11) 『인조실록』권20, 7년 7월 12일

지제교가 되었다.

54세 인조 11년(1633)에는 병조참지, 승정원동부승지, 승정원우부승지, 호군을 지내고 안변도호부사로 나갔다. 이때 김육은 목민관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1635년 안변 관아에 무기고를 정비하여 집고각과 閱武堂을 완성했다. 그리고 당시 학문에 어두웠던 關北 유생들의 학풍을 진작하고 병사를 조련하는 등 치적이 뛰어나 감사 민성휘로부터 최고의 치적으로 보고되어 포상을 받았다. 이 무렵 어느 정도 경제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외직에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자신의 집안 문적을 정리하여 『淸風世稿』를 엮고 5대조 金終弼의 문집인 『楓巖集』을 간행했다.[12]

57세 인조 14년(1636) 임기가 만료되어 상경한 후 3월에 동지 · 성절 · 천추 · 진하사에 임명되었다. 이때는 신생국 청이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육 일행은 해로를 경유해 북경으로 가야했다. 다음 해 4월 조선의 항복 소식을 듣고 명의 원병을 청한 후 귀국길에 올라 6월에 돌아왔다. 이 사행기간 중에도 그는 『淸風世稿』를 수정하고, 사행 시절 일기인 『朝京日錄』을 짓는다. 이때의 시문을 모은 것이 『玉京壯遊錄』이다. 김육은 杜甫의 시는 굿심이 높아, 평소 두보의 시는 차운한 작품을 웍한 제작했는데, 북경에서 지은 200편의 集句詩를 『集杜詩』에 묶어 편찬했다. 김육은 사행 길에 古詩와 賦를 많이 지었다. 이는 古風을 추구한 17세기 문단의 특징이다.[13]

59세 인조 16년에 장례원 판결사, 예조참의를 지내고, 6월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가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을 건의한다.[14] 또 기상이변에 의해 만연한 기아와 전염병에 대한 구제를 위해 『救荒撮要』와 『辟溫房』을 간행한다. 『구황촬요』는 세종 때 엮은 『救荒闢穀方』과 중종 때 엮은 『救荒節要』에서 긴요한 것을 취하여 명종 9년(1554)에 찍어낸 것이 그 초인본인데, 이것을 입수 重修・刊行하여 道內에 널리 펴낸 것이다. 여기에는 흉년의 기근에 대용할 수 있는 각종 食物作法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주된 것으로 松葉末法 · 楡皮汁法 · 楡皮餠法 · 穀末粉法 등이 실려 있다. 그리고 『辟溫房』은 『簡辟溫房』을 일컫는 것으로 전염병의

12) 『국역 잠곡유고』 권9, 跋, 「楓巖集跋」
13) 이종묵, 「潛谷 金堉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硏究』 9, 2005, p,311.
14) 『국역 잠곡유고』 권7, 啓辭, 「大同別單 投進啓」

종류에 따른 치료법과 그 예방법을 간명하게 해설하여 언해한 것이다. 이것들은 목민관으로서 그리고 향후 경세가로서 김육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또 중국의 수차를 모방해 관계에 이용하는 한편 전국에 보급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趙光祖와 고조 金湜을 비롯한 鄭光弼・安塘・李長坤・金浮・奇遵・申命仁 등의 8현의 『己卯八賢傳』과 고조 김식이 一等一人으로 발탁된 기묘년의 『薦科榜目』을 간행했다. 다음 해에는 기묘년 被禍 또는 削職된 170여 인의 전기인 『己卯錄補遺』와 『楓巖集』을 重刊하였다. 임기만료 후 조정에 돌아온 후에는 승지를 지냈다.

인조 18년(61세)에 승지・형조참의 겸 성균관 대사성・병조참의를 지내고 명의 역사를 정리하여 『皇明紀略』을 저술했다. 다음 해에는 여러 차례 승지를 지내고 홍문관 부제학에 올랐으며 이듬해 사간원 대사간, 호조참의 등을 지냈다.

이러한 환로에도 1642년에 시작하여 1643년 가을에는 『類苑叢寶』를 저술하였다. 서문에 따르면, 연이은 전란에 의해 소멸된 典籍과 자긍심을 조속히 회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事文類聚』『藝文類聚』『唐類函』『天中記』『山堂肆考』『韻府群玉』 등 여러 책을 참조하여 저술했다고 하는데, 조선후기 類書類의 선구로 평가된다.[15]

64세 인조 21년(1643) 승문원부제조, 한성부우윤, 도승지, 원손보양관, 병조참판 등을 역임했고 그해 12월에는 昭顯世子의 원손을 받들고 심양에 갔다. 다음 해 5월 북경이 청군에 함락된 소식을 듣게 된다. 사행 중의 여가에 써 모은 원고에 검토를 거듭한 끝에 『種德新編』을 완성한다. 이 책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받은 『소학』을 읽고 상대를 사랑하는 '仁'의 문제, 다른 이를 구제하는 '義'의 문제, 그리고 의혹을 풀게 하는 '智'의 문제에 대하여 터득한 그의 倫理論이 담긴 것이다.

66세 인조 23년 소현세자가 졸서하자 묘소제조를 맡았고, 의정부 우참찬을 거쳐 예조판서에 임명되고 세자책례도감 제조와 내의원 제조를 겸임했다. 그해 12월에 역법에 관한 계사를 올리고 북경에 日官을 파견해 時憲曆을 배워올 것을 건의한다. 중국에 갔을 때 서양인 湯苦望이 시헌력을 쓰는 것을 보고 그에 관한

15) 『국역 잠곡유고』 권9, 序, 「類苑叢寶序」

서적을 구입해 왔으며, 상소를 올려 관상감 관원 金尙范 등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연구하게 하도록 청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조정에서는 시헌력을 공식적인 책력으로 채택했다.

다음 해 2월에는 사은부사가 되어 정사 이경석과 함께 북경에 갔다가 6월에 돌아왔는데 당시 사행 중 죄인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파직 당한다. 이해에 사행을 다녀 온 후 『燕行感慨錄』을 지었다. 이후 개성유수로 2년여 봉직하면서 효경과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충경을 합해서 『孝忠全經』을 간행한다. 서문에서는 책의 간행이 학문의 시작과 배움의 차서에 모범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魯論正文』으로 개경 선비들의 학풍이 진작되길 권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童蒙先習』, 『史略』 등을 간행하여 아동교육에도 힘썼다.

70세 1649년 5월에 인조가 서거하자 예조판서에 임명되어 빈전도감과 국장도감의 제조, 찬집청 당상, 지춘추관사를 겸임했다. 8월에 사헌부대사헌으로 옮겼다가, 9월 1일에 우의정에 올랐다. 그는 7차례나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는 중에 10월에는 정책 건의로 7개조의 조목을 진달한다. 첫째는 大同法의 시행이었고, 둘째는 御營軍을 병조 직속으로 하자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江都와 남한산성에 군량을 저축하자는 것이었고, 넷째는 三南의 전세를 강도에 비축하자는 것이었으며, 다섯째는 嶺南의 전세를 작목하자는 것이었고, 여섯째는 海西의 전세를 角山에 수송하자는 것이었으며, 일곱째는 兩湖의 소금 판매를 혁파하고 본 고을에 소속시키자는 것이었다. 우의정에 오른 직후의 첫 정책이었다.[16] 7개조 조항은 모두 재정개혁에 관한 것으로서 그의 주된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이해 11월부터 출사하여 대동법의 시행을 논하고, 절목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해에 『三途度厄錄』을 지었는데, 72세 효종 2년(1651) 1월에 마침내 영의정에 올라 훈련도감과 군자감의 도제조를 겸임했다. 그리고 7월, 숙원사업이었던 호서대동법을 시행했다.

그는 최고 관직에 오르고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저술을 멈추지 않았다. 『攷事增刪』을 저술하고, 『海東名臣錄』을 편찬 했다. 『고사증산』은 지금 서지 사항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며, 『해동명신록』은 신라말기 薛聰・崔致遠・崔沖

16) 『잠곡연보』 1649 인조27년 10월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의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한 尹棨·鄭蘊 등에 이르는 총 321명의 인물을 소개한 것이다.[17] 다음 해에는 백성들이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도록 건의해 채택되었다. 또 손녀(차남 김우명의 딸)가 왕세자빈으로 간택된다. 이때부터 그는 1658년까지 8년간 일국의 원로대신으로서 자신의 경륜을 펼칠 수 있었다.

2. 가풍과 사우관계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김육의 經世的 學風에서 광해군대 10년간의 隱居생활과 인조·효종 연간의 使行 체험을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광해군 5년(1613)부터 1623년 仁祖反正 직전까지 10년 동안 경기도 加平의 潛谷에서 晝耕夜讀했던 생활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경력, 그리고 모두 네 차례에 걸친 사행의 과정을 통해 중국의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이 결국 大同法과 用錢論이라는 김육 經世學의 두 가지 축을 이루어낸 배경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은거와 사행이 김육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상적 轉機를 이루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7세기 전반의 조선사회에서 은거와 사행이 김육만의 독특한 체험은 아니었던 만큼, 그것만으로 그의 활동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따라서 김육의 經世論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학문 성향을 당시의 전반적인 사상적 분위기에서 조망하고자 한다면 이때 가풍과 사우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육의 학풍에서는 가장 먼저 高祖 金湜(1482~1520)으로부터 이어지는 家學의 전통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己卯士禍 당시 成均館 大司成을 지내며 士林의 公論을 주도했던 김식은 '光祖金湜之輩'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조광조(1482~1519)와 더불어 기묘사림의 핵심에 위치했던 인물이다.[18] 기묘사화 이후 후손들이 적극적인 출사의 뜻을 버림으로써, 김육의 증조·조부·부친에 이르는 3대 동안은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그저

17) 이우성, 『한국고전의 발견』, 한길사, 2000, p,247.
18) 宋雄燮, 「中宗代 己卯士林의 構成과 出身背景」, 『韓國史論』45, 2001, p,139.

몰락한 상태로 지속된 기간은 결코 아니었다.

김육의 증조 金德秀와 조부 金棐, 부친 金興宇는 비록 세인의 주목을 받는 중앙의 요직에 등용된 일은 없었지만, 16세기 후반의 새로운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近畿地域 士林의 핵심으로 활동하며 김육 사상의 형성에 밑바탕을 이루어준 인물들이었다. 증조 德秀의 행적에 대해서는 김육이 평소 견문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潛谷筆譚』에 의하면 德秀가 은거하던 집에는 항상 배움을 청하러 찾아온 학생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尹斗壽(1533~1601)와 尹根壽(1537~1616)형제가 있었음이 주목된다. 특히 윤근수의 경우 德秀의 조카이자 김육에게는 從祖父가 되는 金權(1549~1622)에게도 수학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김육의 집안이 16세기 후반 畿湖學派의 성립 과정에서 한몫을 담당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부 김비 역시 당시 근기지역 道學의 주류를 형성하던 白仁傑(1497~1579) · 成渾(1535~1598)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김비의 사위 즉 김육의 고모부는 문장으로 이름난 體素齋 李春英(1563~1606)으로 바로 백인걸의 외손이자 성혼의 문인이었다. 동시에 성혼의 아들 成文濬(1559~1626)의 처사촌이 되었다. 이렇듯 김육과 성혼의 집안은 백인걸 집안을 매개로 인척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從祖父 金權 및 부친 興宇 역시 성혼의 문인이었다는 사실은 김육이 한미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기묘사림의 학풍을 계승하여 전해지던 16세기 후반 근기지역 사림의 중심부에서 성장했음을 말해준다. 김육 역시 그러한 점을 깊이 자각하여, 훗날 성혼과 백인걸의 추숭 사업을 주도하고 『體素集』의 跋文을 짓기도 한다. 또 임란으로 인해 피난 생활 중이던 선조27년(1594) 15세의 나이에 海州의 石潭으로 찾아가 한 차례 拜謁한 인연이 있었을 뿐이지만 김육은 성균관 유생 시절 임진왜란 때 입은 성혼의 誣陷을 신원해 달라는 상소를 올린다.[19]

15세에 부친을 잃은 김육에게 종조부 김권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자 스승이기도 한 인물이었다. 김육은 광해군3년(1611)의 悔退辨斥과 광해군5년(1613)의 癸丑獄事 이후의 시기를 소인배들이 득지한 때로 규정하고,[20] 고모부 임경홍의

19) 『光海君日記』권32, 2년 8월 21일.

집 근처인 잠곡의 청덕동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김육은 김권과 왕래하며 시정을 공유한 듯하다. 특히 광해군 10년(1618) 폐모론에 반대하다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된 김권을 찾아가 전송하며, 다음의 시를 통해 그의 학문과 절의를 칭송했다.

배운 바가 참으로 무엇이었나, 평생토록 성현의 글 읽으셨네.
차라리 굳세어서 꺾일지언정, 굽실거리며 온전하게 되지 않았네.
비록 나라 구하지는 못했으나, 집안 명성 이로 인해 전해지리니.
이별 임해 흘리는 한 움큼 눈물, 목릉 있는 하늘 향해 흩뿌리누나.[21]

가학의 전통 이외에 김육의 학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가장 먼저 芝山 曺好益(1545~1609)을 들 수 있다. 김육이 아홉 살이던 선조21년(1588) 평안도 강동의 수령으로 부임하던 조부를 따라갔다가 그 곳에서 유배 생활 중이던 조호익을 만나게 된다. 김육은 이듬해까지 서울과 강동을 오가며 조호익에게 글을 배웠으므로 실제 가르침을 받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어린 나이의 김육에게 체계적인 학문을 전한 사람으로는 집안 어른을 제외하면 조호익이 유일한 만큼, 김육은 평생 동안 조호익을 스승으로 받들며 행장을 짓기도 했다.[22]

그런데 지금까지 김육의 스승으로 거론된 인물들은 대개 서인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던 반면 조호익은 이황의 직계제자라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그는 스스로 '經典僻'을 지녔다고 자부할 정도로 경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또한 이황의 문인답게 주자의 학문에 충실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던 학자였다. 그는 주자의 경서 주석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죽기 직전까지 『朱子大典』을 뒤적이며 '앞으로 이 책이 내가 없는 것을 서운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23] 김육은 스승의 저술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주자의 마음을

20) 『국역 잠곡유고』 권1, 詩, 「羸羌」
21) 『국역 잠곡유고』권2, 詩, 「送參判大父謫江界」, "所學誠何事 平生讀聖賢 寧爲齒剛折 恥作舌柔全 國是雖無救 家聲賴有傳 臨分一掬淚 灑向穆陵天"
22) 『국역 잠곡유고』권11, 行狀, 「贈吏曹參判芝山曹先生行狀」
23) 『국역 잠곡유고』권11, 行狀, 「贈吏曹參判芝山曹先生行狀」

계승하였다'고 표현한 바 있으니, 조호익은 김육에게 성리학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해 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4]

증조 김덕수와 종조 김권의 문인인 윤근수 역시 김육에게 큰 영향을 미친 스승 가운데 하나다. '김육의 경술은 윤근수가 성취시킨 것'이란 기록은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25] 그런데 윤근수의 학풍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그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조선의 문단을 풍미했던 이른바 '古文運動'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金尙憲(1570~1652)·張維(1587~1638)·鄭弘溟(1592~1650) 등 세 명의 文衡을 비롯하여 鄭曄(1563~1625)·趙翼(1579~1655) 등의 '秦漢古文派'는 실로 17세기 전반 정치와 문단의 실세로 군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六經과 『莊子』『史記』『左傳』 및 韓愈의 글을 중시하는 文風을 유행시켰던 인물들이였다.

특히 김육이 남긴 글들 가운데 『莊子』『史記』를 문장의 전범으로 삼았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및 그가 호란 직후 『左傳』의 간행과 보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실은 김육이 윤근수의 문인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진한고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26] 그런데 이들이 典範으로 삼았던 明代 擬古門派의 문제의식이 비록 문장론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宋儒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관료학자들의 학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던져준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잠곡에 은거하며 외롭게 지내던 시절 장유 및 최명길(1586~1647)과 교유한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광해군 7년(1615) 김육이 晦靜堂이라는 書室서도 었서도때 장유가 기문서도써주었고,[27] 광해군 14년(1622)에는 최명길과 함께 현등사를 유람한 일 등,[28] 10년간의 은거 생활 동안 두 사람과의 교유 사실만이 年報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김육과 그들 사이가 매우 절친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24) 『국역 잠곡유고』권9, 序, 「家禮考證序」
25) 『淸陰集』권39, 跋, 「月汀先生集跋」"一金宗伯堉 竝以經術著聞 實先生成就之力也.一"
26) 『국역 잠곡유고』 권9, 跋, 「重刊左傳跋」.
27) 『잠곡연보』 1615 광해군7년 공의 나이 36세
28) 『잠곡연보』 1622 광해군14년 공의 나이 43세

그런데 장유와 최명길 역시 고문파에 속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매우 다기한 학문적 성향을 지니고 있던 인물들이다. 훗날 비슷한 성향의 李景奭(1595~1671)과 趙絅(1586~1669)이 김육에 대하여 군사 · 천문 · 지리 등 여러 방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한 점 역시 당시 김육을 위시한 근기지역 학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학문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김육은 기묘사림 및 성혼, 백인걸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며 의리론에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호익의 漢代學風과 윤근수의 秦漢古文論 등 17세기 전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유행하던 다양한 사조의 세례를 받은 학자의 풍모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김육 역시 조선의 유자이며 학인이므로 주자성리학에 대한 소양이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주자성리학에 투철했던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退溪, 栗谷 이후 성행했던 理氣心性說과 같은 이론논쟁에는 관심이 없었다.[29] 반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30]

그는 民生救濟策에 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2세 때 아버지로부터 『小學』을 배우다가 '벼슬길에 나선 관리가 진실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백성들을 반드시 구제할 수 있다'는 구절에 감동하여, 程顥의 '愛物濟人'을 마음에 새겨 두었고, 뒤로도 책을 볼 때마다 '애물제인'에 관련된 글이 있으면 기뻐하며 기록하였다 한다.[31]

김육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것을 흡수하였지만, 山黨 등 성리학 근본주의자와는 학풍을 크게 달리 했다. 유학의 2대 과제를 자기를 수양하는 修己와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治人으로 보았을 때, 성리학 근본주의자들은 수기가 잘되면 경세는 저절로 된다고 보아 수기에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김육은 經世論의 독자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기에 못지않게 중시

29) 정연식, 「湖西大同節目 서문에 보이는 金堉의 공리주의적 사고」, 『인문논총』 16, 2008. p.204.
30) 장숙필, 「잠곡 경제설의 사상적 토대」, 『韓國人物史硏究』 6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p.63.
31) 『국역 잠곡유고』 권9, 序, 「種德新編序」

했다.[32] 당시 일반적인 상소의 주된 내용은 수기에 관한 것이었으나, 김육이 올린 상소들은 時務에 관한 비중이 높았다. 「家狀」에서 '오직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에 혜택을 주는 데에 마음을 두어서 남을 위한 학문은 지식과 실천을 함께 진전시킴을 중시했다.'하는 바와 같이,[33] 그는 實質과 實踐을 중시했다. 주자 성리학자와 달리 그는 천리의 객관적 실재 여부야 어떠하든 경세의 실천이념에 유용한 다양한 사상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김육의 성리학적 측면의 학문 연원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芝山 曺好益과 牛溪 成渾을 들 수 있다면, 회통적인 실천적 학풍은 徐敬德으로부터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된다.[34] 「臨皐書院配享位次啓」에서 圃隱 鄭夢周로부터 시작한 동방의 이학을 전수받은 가장 뛰어난 인물로 조광조와 서경덕을 들었으며 「花谷書院祠宇重創上樑文」에서는 서경덕을 주자처럼 이치에 통달하고 명을 알았다고 평가했다.[35]

조광조를 높이 평가한 것은 그의 가풍에서도 짐작되지만 서경덕은 평생 처사로 궁리를 통한 자득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경세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의외로 보인다. 물론 「臨皐書院竝配是非」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거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몽주의 학문을 계승한 학자로 당시의 상식인 이언적・이황・성혼・이이를 거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경덕 계열의 학인들이 대체로 동인으로 포진하였다는 점에서 김육이 단순히 주자순정주의적 학문경향을 숭상하지는 않았음은 분명한 듯싶다.[36]

사실 서경덕 학파는 주자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陽明學, 佛敎, 老莊思想 등을 포용하여 개방적이었고 실제 정계에서는 경세론 변통론에 힘들였던 실무관료를 많이 배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서경덕 학파의 학풍이 김육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물평가에서도 학문적 업적 못지않게 실제적인 경세의 업적을 이룬 인

---

32) 이헌창, 「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업적」,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149.
33) 『국역 잠곡유고』 권9, 序, 「家禮考證序」
34) 자료의 불충분으로 일반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글: 김준태, 「잠곡 김육의 실용적 경세사상 연구」, 『儒敎思想硏究』 31, 한국유교학회, 2008, p.177.
35) 이헌창, 「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업적」,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152~153.
36) 『국역 잠곡유고』 권7, 啓辭, 「臨皐書院配享位次啓」

물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임진왜란에서 忠을 실천하고 功을 세운 李舜臣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608년 대동법이 처음 시행되는 데에 진력한 李元翼을 존경하여 꿈속에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했다.[37] 이러한 인물 평가는 개방적 태도와 유연한 학문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이 틀림없다.

3. 김육의 경험적 務實志向과 실천

김육은 학통과 세평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과 실천을 중시하였다.[38] 이것은 농촌생활에 따른 치열한 현실과의 만남과 관련이 있었다. 광해군 치세 정인홍의 '晦退辨斥'을 겪으면서 대북정권과 불화하며 10여 년을 가평에 은거하였는데, 이때 생활은 고즈넉한 곳에 자리 잡은 여유로운 삶이 아니었다. 거처는 옮겼지만 기거할 집이 없어 굴을 파고 헛가래를 얽어맨 움막에서 살았다. 낮에는 나무를 베고 저녁에는 송진 불을 켜고 책을 읽는 그야말로 晝耕夜讀의 연속이었다. 이때 농촌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농민적 삶을 이해하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당시 도성에 파루를 치면 가장 먼저 동대문으로 들어선 이가 바로 그였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부지런했다고 한다. 서른을 넘긴 나이에 겨우 초가삼간을 짓고 懷情堂이라는 당호를 걸었지만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남의 밭에 김을 매주고 숯을 구워 팔아 끼니를 해결하는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명분과 의리가 민생을 충족시킬 수 없음도 분명하였다. 이때 열악한 생활조건과 重稅에 시달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구체적 '실'의 사업이 필요함이 우선이며 대의와 명분은 다음으로 고려할 문제였다.

이러한 '무실' 취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관행이나 예규를 바로잡으려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당시 과거급제자를 포함한 관인사회의 오랜 폐습이었던 免新禮의 관행을 거부했다. 그가 義禁府刺史로 처음 벼슬길에 나섰을 때도 관례에 따라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신참으로서 免新禮를 치러야 했다. 실제로 신참에게 술과 음식을 내게 하고 이를 통하여 신참자로 하여금 동료들 사이의 위계질서에 순응하고 직무관행에 시비하지 말라는, 일종의 잘못된 집단의식의 강요와

37) 『국역 잠곡유고』 권2, 詩, 「夢見完平」
38) 장숙필, 「잠곡 경제설의 사상적 토대」, 『韓國人物史硏究』 6,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p.59.

주입 절차라는 점에 면신례의 폐단이 있었다.

김육은 즉시 동료 선임자에게 정중한 편지를 내어 그 부당성을 들어 항의하고 결국 이를 중지시켰다.[39] 이때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서울에 살지 않은 지가 10년이나 되고 지금은 부족한 노자로 여관에서 寄食하는 처지이며, 시골집 역시 궁벽해서 하인들이 찾아오는데도 길을 잘못 들어 헤매는 실정이며, 나아가 무엇보다도 아랫사람을 檢束하고 직분을 다 하는 것이 어찌 술과 안주의 많고 적음에 달린 일이겠으며, 지금은 反正 뒤의 新化의 大機會에 前朝의 잘못된 폐습은 모두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관직 생활 동안 한결같이 나타났다.

다음은 그가 관직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陰城縣監이었을 때 올린 상소문이다.

오호라, 국가를 견고하게 하는 道는 安民이 근본이 되니 백성이 편안하면 국가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臣이 어찌 백성에게 사사로운 애정을 가지고 국가에 있어 군대의 시급함이나 세입의 중대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一縣의 폐단을 미루어 八道에 미쳐 族隣을 침해함이 없게 하고 流亡한 자를 돌아와 모이게 한다면 백성은 날로 번성해지고 농지는 모두 개간될 것이나, 군인이 충당되지 않는 것을 어찌 근심하겠으며 國用이 부족한 것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臣이 一縣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곧 일국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40]

전란의 폐해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점에 백성이 편안해야 국가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부국의 기초는 안민이라는 것이다.

김육은 지방관의 활동을 통해 백성의 실정을 직접 접했는데 인조 11년(1633)부터 인조 14년(1636)까지 安邊都護府使, 인조 16년(1638) 6월 忠淸道觀察使로 임명되어 인조 17년 8월에 조정으로 되돌아왔다. 外官은 아니지만 인조 25년(1647) 4월부터 2년간 開城留守로 활동했다. 그는 지방관 활동을 통해 피폐된 농촌농촌농촌실상을 체험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안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제

39) 『국역 잠곡유고』 권9, 書狀, 「與許經歷沃余書」
40) 『국역 잠곡유고』 권4, 疏箚, 「陰城縣陳弊疏」

시했다. 실제로 그는 忠淸道觀察使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충청도에 대동법 실시를 주장했다.[41] 그리고 개성유수로 활동하면서 개성의 동전 유통 현황과 상업적 분위기를 체험하고 平安・黃海道의 동전유통 정책을 건의했다.[42]

김육은 3차례에 걸쳐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왔고, 한번은 심양에서 장기간 체류했다. 그의 첫 使行은 인조 14년(1636) 6월 冬至·聖節・千秋・進賀使에 임명되어 海路로 明朝의 북경을 왕래한 것이었다. 淸軍의 점령지를 우회하기 위해 해로에서 明軍의 협조와 向道를 받느라 거의 1년을 소요했다. 그러한 우여곡절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북경에서 삼전도의 소식을 들은 것도 3개월이 더 지난 이듬해 4월 하순이었다.

두 번째 사행은 인조 24년 2월 명나라가 패망한 2년 뒤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청나라에 가는 謝恩副使로서 正使 李景奭과 함께 북경에 다녀왔다. 10년 만에 왕조가 교체된 후 다시 북경에 간 그는 남다른 감회를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使行은 효종 1년(1650) 陳慰使 겸 進香使가 되어 다시 북경을 왕래한 것이다. 이때 그는 자신의 路資로 중국의 錢貨 15萬文을 무역하여 평안도 지역에서 통용했다.[43] 使行은 아니었지만 1643년 12월 元孫 輔養官으로 심양에 갔다가 9개월간 체류한 적도 있었다. 당시 심양에는 昭顯世子와 鳳林大君 등이 인질로 잡혀있었다. 이듬해 8월까지 그는 심양에 체류하면서 청군이 山海關을 넘어 북경을 함락한 정황을 현지에서 보고 들었다.

김육은 4차례에 걸쳐, 그것도 明末淸初의 격변기에 중국의 사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많은 자극을 느꼈다고 생각된다. 오랑캐의 나라라고 치부했던 청의 발달된 문물은 당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 사행을 통해 당시 식자・관인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폭넓은 시야와 국제적 감각,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닌 정치관료가 바로 김육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자학자 일반의 완고하고 편협한 인식태도와는 사뭇 다른 자세로 자신의 삶과 관인으로서의 입장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實事・實用을 중요시하는 인식과 실천의 태도였다. 그는 중국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실상, 이를테

41) 『仁祖實錄』 권37, 16년 9월 27일.
42) 『국역 잠곡유고』 권4, 疏箚, 「辭輔養官東遼後加資疏」
43) 이영춘, 「17세기 朝鮮 정치사에서 본 金堉과 그의 가문」,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284.

면 중국의 지세와 경관, 도로와 운송, 농촌과 도시, 가옥과 성곽, 상공업과 물산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문물 등에 관해 많은 詩作으로 남겼다.[4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육은 대의와 명분보다 實을 중시하는 무실론에 섰다. 또한 그의 사상은 이론 탐구의 결과이기에 앞서 안민이라는 큰 목표를 전제로 한 구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김육이 1654년 작성한 「湖西大同節目序」의 일부다.

誠意와 바른 마음을 말하는 세상의 학자들은 모두 책에 실린 것을 주워 모아서 뜻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바르면 천하와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단지 말로만 하고 사무를 급히 하는 자를 공리를 추구한다고 비웃으며, 심지어 張儀나 王安石 같은 인물로 헐뜯기까지 하니, 이 어찌 마음을 합쳐 국가를 위하는 도리이겠는가. 못난 내가 소견이 얕아 비록 학문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마음을 바르게 간직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하며 절약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를 원하여, 헛된 이상을 추구하여 내실 없는 글을 숭상하지 않고자 한다.[45]

여기에서 김육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實'을 바탕으로 함을 분명히 밝히면서 명분만 앞세우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實'의 추구는 兩亂의 참혹상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인 동시에 스스로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명분에 매달리는 당시의 집권층에 대한 불신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그는 명분에 따라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 전개를 면밀히 따져본 뒤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육에게 '실'은 국익과 안민을 위하는 것이었다. 백성의 생활을 제약하고 불편하게 하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명분은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라가 의지하는 것은 백성이고 중하게 여기는 것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백성이 모두 죽어 넘어지면 국가는 장차 어디에 의지할 것입니까? 하늘을 감동시키는 길은 오직 지극한 정성에 있는데, 명산에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일은 단지 희생과 폐백만 소모하는 것이

44) 『국역 잠곡유고』 권8, 書狀, 「玉河館紀行書懷示書狀」
45) 『국역 잠곡유고』 권9, 序, 「湖西大同節目序」

고, 억울한 죄수를 심리하는 일은 역시 말단에 관련되는 것이니 어찌 하늘에 반응하는 實이겠습니까 …… 政事를 시행하는 중에는 實이 드러나도록 바라고 힘써서 조금도 거짓되거나 이익이 없는 일이 없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마음에 미진한 곳이 있으면 바로 주선하여 이를 바꾸어 일로 하여금 모두 實地로 돌아가도록 하면 피차가 한 가지 이치이니 어찌 감응하는 도리가 없겠습니까?[46]

이러한 무실론은 그의 정치적 신념이 되었고, 구체적 정책 방향은 '均役'을 통한 안민으로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를 발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나라를 위하는 길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은 인재를 얻는 데 있다."[47] 또한 '實'은 인재를 판별하는 기준이기도 하였다.

臣이 지난번 榻前에서 첫 벼슬하는 사람의 다수가 京華子弟 가운데서 나오면 外方의 사람은 재주를 갖고도 헛되이 늙어가니 진실로 애석한 일임을 상세히 아뢰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청하기를 年初에 외방으로 하여금 문무에 재능이 있는 자를 천거하였는데, 허락을 얻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안에서 시행하게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수가 그 선발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은 외방의 바라는 바가 빠질까 두려워합니다.[48]

김육은 이와 같은 글을 통해 먼 지방에서 재주를 갖추고도 등용되지 못하는 인재가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안민부국의 실현을 위해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각 고을에서 우수한 인재를 薦擧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재 판단의 기준으로 신분이나 학식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 경험과 직무에 밝은 정도, 개인적 능력과 성실성에 두었다. 이것은 관념적이고 도덕적 잣대만 내세우는 인재등용 기준과 크게 대비되는 김육의 열린 인재론이라 할 수 있다.

무실론은 그가 확고한 소신으로 정책 구현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수많은 정치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안이 명분과 실리의 사이에 갈

46) 『국역 잠곡유고』 권7, 啓辭, 「祈雨賞格還收啓」
47) 『국역 잠곡유고』 권4, 疏箚, 「辭右議政疏」
48) 『국역 잠곡유고』 권4, 疏箚, 「論薦人事箚」

등할 때에도 利用厚生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그것은 다양하고 유연한 학문적 배경과 현실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안민이었다. 이러한 무실을 통한 안민본위론은 조선시대 사상사에서에서 경세론의 흐름에 속하는 것이며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혁을 동반하는 변통론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Ⅲ. 김육의 '安民變通論'과 大同法

1. 대동법 확대 실시와 김육의 역할

대동법은 제도 자체로서의 의의에 못지않게 시행과정의 논의 즉 변통논의의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도 자체의 성격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실시 과정에서 당대 학자관료의 경세론을 확인할 있고 이는 곧 국가재정확보 방안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국가운영론 내지는 정치사상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조세제도의 근간은 租庸調체제에 기반을 둔 田稅・賦役・貢納制였다.[49] 이중 각 지방의 특산품을 바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공납제는 郡縣 단위로 부과하고 각 군현에서 家戶를 대상으로 賦課・徵收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주와 양반관료는 상관이 없었지만 一戶를 이루는 농가세대 특히 영세농민에게는 처음부터 불리하였다. 더구나 징수액을 미리 상정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방마다 부과액이 일정하지 않고 차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품이 아닌 공물을 납부하자면 외지에서 무역하여야 하였으므로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성행한 방납은 토호 및 관권의 농간과 겹쳐서 더욱 농민생활을 곤란하게 하였다. 그렇다고 국가재정이 고갈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殘廢邑은 국가의 정액을 채우기 위하여 적은 民戶에 보다 무겁게 징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大・小邑의 불균은 심각하였다. 김육도 陰城縣監 시절에 지적하였다.

> 縣의 淺薄함은 湖西에서 가장 심합니다. 비단 호서에서만 薄한 것이 아니라 八道 중에서 또한 음성현의 박함과 같은 곳이 없습니다. 대개 列邑의 盛衰는 地面의 大小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은 4~50面, 혹은 2~30面이고, 적은 것도 또한 10여 面 내지는 6,7,8,9面은 내려가지 않은 것인데 본 현은 다만 2面이 있을 뿐입니다.[50]

더구나 방납의 폐단은 더욱 심각하였다. 토산물이 아닌 공물을 납부하자면 그만큼 많은 부담이 지워졌고, 이러한 방납 과정에서 수반되는 운영상 폐단도 심각

---

49) 김세봉, 「金堉의 社會經濟政策硏究」, 『史學志』21, 단국대, 1988, p,332-333.
50) 『국역 잠곡유고』 권4, 疏箚, 「陰城縣陳弊疏」

하였다. 흔히 관청에서는 '點退'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방납인과 결탁하여 농민에게 加斂하였던 것이다. 이때 전결에 전가하여 징수하기도 하였는데 김육도 '1결의 貢賦價米가 거의 60~70斗에 이른다'고 하였다.[51] 당시 1결의 전세가 '하등전 4斗요, 中等田 6斗이며 대부부이 下等田인 실정이고 보면 공물납부로 인한 농민부담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러한 공납제의 폐단은 비단 김육 이전의 시기부터 국정의 현안이 되고 있었다. 공납제도의 폐해에 대해 시정을 처음 주장한 인물은 중종 때에 정암 조광조였다. 그는 공물을 토산물 위주로 재조정하고 줄여서 징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인해 자신의 뜻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 후 명종 때 柳希春은 「庭訓」에서 공납제의 폐단을 지적한다.[52] 10년 후인 선조 2년(1569) 栗谷 李珥는 「東胡問答」에서 당시 해주 지방관이 공물에 대신하여 1결에 쌀 1말을 거두어 직접 공물을 조달하여 상납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防納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후 柳成龍은 壬辰倭亂으로 군량미의 확보가 지상과제로 대두한 가운데 1592년부터 공물을 쌀로 대신 납부하게 하고, 1594년에는 그것을 제도화하게 된다.[53]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미법은 1599년에 폐지되었다. 韓百謙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1결마다 2말의 부담은 가벼우나 山郡의 운반비가 무거웠다.
둘째, 官廳이 값을 깎아 市廛商人이 원망했다.
셋째, 서울을 수복한지 오래지 않아서 물화 구매가 어려웠다
넷째, 이익을 봉쇄당한 방납의 무리가 불평했다.

이렇듯 오랫동안 개혁정치가들의 핵심과제였던 공납제도의 시정은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관료들은 수미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시책을 건의했다. 그것이 大同法이다. 광해군 원년 한백겸과 이원익은 대동법 시행

51) 『仁祖實錄』 권1, 원년 9月 23일.
52) 이종범,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p,157-158.
53) 이헌창, 「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업적」,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204-205.

을 건의하였다.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관청의 防納人에게 막혀, 한 물건의 값이 3, 4배 또는 수십 수백 배까지 징수되어 그 폐해가 이미 고질이 되었는데 특히 京畿道가 심합니다.[54]

영의정 이원익의 주장은 공납 대신 토지 1結당 쌀 12斗를 걷어 관청의 물품 조달과 비용으로 쓰게 하자는 안으로 광해군 즉위년(1608년)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었다. 경기도에 대동법이 먼저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종래 요역의 부담이 무거웠던 점과 쌀의 운반이 쉽고 서울과 개성에 시장이 발달하여 시행이 용이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시행된 지 半年이 지나 그 폐지 여부가 논의될 정도로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防納 謀利輩가 궁중과 세력 있는 양반과 결탁하여 그 폐지를 요구하였고, 承旨 柳公亮은 '불편한 일이 많다'하여 반대했다. 결국 1610년과 1614년에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광해군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거부했다.[55]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의 확대 실시는 인조 원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1624년에 이원익의 건의로 강원 · 충청 · 전라에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그는 대동법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 최고라고 했다. 광해군 때에 실시된 경기도의 대동법은 1結에 연간 쌀 16斗를 거두면서 進上과 雜役을 포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半大同'이라는 비방이 쏟아졌다.[56]

당시 대동법의 理念을 體系化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익도 상소를 통해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되던 해에 흉년이 들고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 그 실시가 문란해졌다. 결국 인조 3년에 三道大同廳이 革罷되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 · 전라의 대동법이 좌절되었다. 농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 때문에 富戶가 많은 충청 · 전라도에서 시행은 어려웠으나 토지가 적고 공물의 부담이 적은 강원도에서는 道民이 원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었다. 광해군 때부터 시작한 대동법은 小氷期라는 자연재해,[57] 잇단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극심한 반

54) 『光海君日記』권4, 즉위년 5月, 7일.
55) 이헌창, 「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업적」,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207-208.
56) 고석규, 「16 · 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韓國史論』12, 1985, p.211-225.
57) 이태진, 「小氷期(1500-1750) 천변재이 연구와 朝鮮王朝實錄」, 『歷史學報』149, 1996, p.211.

대론에 부딪혀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任土作貢의 전통적 이념, 경제적 여건의 미비, 豪强세력의 반대, 정책논의 과정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 우선 토호의 반대가 심했다. 부과의 기준이 호에서 전결로 바뀌는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면 무전민은 공물부담이 없어지지만 유전민이나 토호들은 그 부담이 커지는 것이 당연했다. 또한 그 전에는 공부의 부담을 일반 농민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었지만 대동법이 실시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특권층과 부유층이 당시 여론을 주도하고 고위 관료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동법 시행에 난관이 컸던 것이다.[58]

대동법의 실시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은 비단 토호뿐만이 아니었다. 공물을 대납 · 방납하고 있었던 세력인 방납인들도 대동법이 시행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방의 공물을 대납하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여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호나 방납인 뿐만 아니라 지방 수령들도 대동법 실시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지금 전결의 원래 수에 따라 모두 2斗를 내어 국용으로 수납하는데, 수령이 그 사이에 손을 쓸 수 없어 수납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이 수령들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59]

수령은 현물이나 노동력을 징발할 재량을 박탈당하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의 반대론 모두가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었다. 국가 위정자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심하게 대립했는데 가히 인조・효종 시기는 '大同法 論爭의 시대'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 치열했다.[60] 대동법을 반대 관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공물보다 무거운 지방의 대동미를 중앙으로 수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지적했다. 효종과 대신들이 대동법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정태화가 아뢴 내용이다.

---

58) 金潤坤,「大同法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배경」,『大同文化硏究』8, 1971, p.28.
59)『西厓文集』, 권14, 雜著,「貢物作米議」
60) 金潤坤,「大同法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배경」,『大同文化硏究』8, 1971, p.31.

호남은 지역이 넓으므로 1結 당 쌀 열 말만 거둔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실어 나르기도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니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61]

또한 정치화는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호서의 일로 말씀드린다면 백성들은 편리하다고 하지만 관가의 형편이 이미 쇠진될 대로 쇠진되어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서에 대동법을 실시한 뒤로도 바다에 인접한 고을에서 생산되는 전복 등속의 물건에 있어서는 또한 서울에서 사들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한다면 귤이나 유자 및 남녘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62]

이렇듯 다양한 반대가 위력을 발휘하던 상황에서 仁祖 16년(1638) 9월 忠淸監司로 除授된 김육이 대동법 시행을 강력히 건의했다.

대동법은 진실로 救民에 필요한 것입니다. 京畿와 江原道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忠淸道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臣이 道內의 結負를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每結에 綿布 1匹과 米 2斗를 내면 進上貢物의 값, 本道의 雜役, 예를 들면 戰船, 刷馬, 官廳營納하는 물건이 모두 그것으로서 처리가 되고도 數萬이 남게 됩니다. 前日에 權盼이 監司였을 때에 도내 守令과 더불어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대동법을 시행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의 농민도 괴롭히지 않고 번거롭게 호령하지 않아도 綿布 1匹과 米 2斗 밖에는 다시 다른 징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救荒을 해야 할 때이며, 이 법을 실시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63]

여기에서 그는 대동법 실시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시급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육은 대동법이 국가재정확보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국가재정 감축을 우려하는 주장이 강했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1월 대동법으로 국가재정이 감축되는 일이 없을 것을 주장한다.

---

61)『孝宗實錄』권19, 8년 7월, 11일.
62)『孝宗實錄』권19, 8年 7월, 11일.
63)『仁祖實錄』권37, 16년, 11월 20일.

臣이 정한 바는 木 1匹과 米 2斗인데 합하여 米로 계산하면 米 7斗가 되는 것이옵니다. … 大臣과 戶曹에서는 모두 米 7斗면 받는 것이 너무 적어서 國用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임금님께서 적어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지방의 백성 적또한 부족하불편한 바가 없습니다. 신은 생각해 보건대 國用에는 부족한 바가 없고 백성에게는 고루 혜택이 있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64]

이때 김육은 토호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주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자는 절충안까지 제안하였다.

토호 중 전결이 많은 자는 혹 3,40결에 이르는데 일시에 판출하기 어려우므로 …本邑에 소용되는 것에 편의에 따라 속봉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일시에 책판할 필요가 있겠는가.[65]

이는 많은 양을 납부할 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分納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반대 여론을 의식한 주장이었다. 반대하는 토호의 여론을 무시한 채 찬성하는 小民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대동법 실시를 지연시키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강원도나 충청도보다 토호가 많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대동법 실시가 그만큼 늦은 것을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김육의 제안은 비변사와 호조를 거치면서 검토되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비변사의 공식 견해는 공안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66] 그것은 물론 공납제의 운영원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동법은 효종이 즉위하고 김육이 우의정에 제수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육은 1649년에 70이라는 나이 등을 이유로 9월에 두 차례, 10월에 여덟 차례의 사직 상소를 통해 대동법 시행을 건의한다.

---

64)『국역 잠곡유고』 권6, 書狀,「請行本道大同法」
65)『국역 잠곡유고』, 권6,「請行本道大同狀」
66)『仁祖實錄』 권37, 16년 11월 20일.

왕자의 정사는 안민이 으뜸입니다. 故人의 말에 하늘에 변괴가 일어나는 것은 백성의 원망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대동법은 역을 고르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진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양책입니다. … 국가의 시령은 마땅히 소민의 원에 따라야 합니다. 결코 부호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이법을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67]

그는 백성의 원망을 두려워하고 소민의 원에 따라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배층은 종래 대동법이 난관에 부딪힌 점을 의식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효종은 "말하기는 매우 쉽지만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 논의가 있은 지 60년이 되도록 바로잡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반문하여 대동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걱정했다.[68] 또한 이어지는 김육의 시행 촉구에도 효종은 반응하지 않았다.

1651년 1월 김육이 영의정으로 복귀하면서 대동법 논의는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閔應亨의 제안이었다. 호서와 호남 지방의 공납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매 결당 3두의 쌀을 거두자는 것이 그 요지였다. 김육은 민응형의 제안을 논의에 부쳤다.[69] 찬반론이 엇갈리면서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았다. 다시 상소하여 공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호서 지방에라도 우선 결당수미법이나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70] 결당수미법 주장이 계속되자 효종은 호서 지방에 이를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고, 폐단이 없을 경우 확대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71] 같은 해 8월 마침내 호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제도개혁을 통해 안민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효종대 들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72]

김육이 작성한 '湖西大同節目'의 내용에는 수납하는 쌀의 元數는 해마다 그때 起墾된 전결 숫자에 따른다. 旱田 · 水田을 통해 1결마다 봄 · 가을에 5두씩을 거두어서 서울과 외방의 1년 용도로 하고, 본도의 1년 동안 지출할 수량을 계산해

67)『孝宗實錄』권2, 1년 11월 5일.
68)『孝宗實錄』권2, 1년 12월 3일.
69)『孝宗實錄』권6, 2년 6월, 3일.
70)『孝宗實錄』권6, 2년 6월, 20일.
71)『孝宗實錄』권7, 2년 7월, 9일.
72)『孝宗實錄』권7, 2년 7월, 20일.

서 체감한다. 그리고 그 고을의 대 · 중 · 소를 분간해서 알맞게 요량하고, 여유의 쌀은 남겨두어 각 항의 쇄마와 과외의 요역에 응한다. 여유 쌀이 부족한 고을에는 여유 있는 이웃 고을의 쌀을 옮겨다가 충당해주며, 경청에서 만약 불시에 특별히 卜定하는 일이 있으면 임시로 조달하는 비용으로 한다.

김육은 이러한 기본 원칙과 함께 전결 수에 따라 수납되는 양을 계산하여 적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은 쌀은 과외의 役에 조달하는 데 쓰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해변과 강변 고을은 쌀을 상납하고 산중 고을은 면포를 상납하도록 하며, 서울에 상납하는 쌀 · 면포를 수운하는 船價와 馱價는 수납한 쌀의 원수 안에서 計減하는데 면포는 정월, 쌀은 4월 기한으로 상납하며, 기한 내에 미납한 수령은 처벌 면포까지 명시해 놓고 있다. '호서대동절목'은 내용이 자세하고 일목요연하여 후에 다른 절목이 이를 모방하여 작성되기까지 한다. 1656년 9월 호남에서의 대동법 시행을 다시 제기하고 나선다.

종전부터 호남인들은 계속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청하여 왔는데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이 이 문제에 급급한 것은 호남은 나라의 근본인데도 재해가 심히 많아 민심이 나라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백성은 모두 대동법을 실시하기를 바라지만 수령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 50여인이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백만 인이 크게 바라는 바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73]

대동법 실시를 현지의 백성들이 원하고 있으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0여명에 불과한 수령 때문에 몇 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의 바람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김육의 호남 대동법 시행론에 대해 효종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 호서 대동법의 성공적 시행은 많은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장령 조극선이 효종의 인견시 대동법 실시 후 호서 백성들이 편해졌음을 아뢰고 있는 것이나, 초기에 반대자였던 이후원도 호서지방의 백성들의 편함을 알고, 확대 실시에 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74] 비변사 역시 김육의 주장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었다. 한

73) 『국역 잠곡유고』, 권6, 疏箚, 「兩湖通行箚刺」
74) 『孝宗實錄』 권19, 8년 9월, 20일.

편 일부 양반관료들이 공물을 매점매석하여 공인으로서의 이권을 점유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대동법의 시행에 적응하여 새로운 수익의 추구를 전개하기 시작했던 양반관료들도 찬성하게 되었다.[75]

마침내 김육이 끈기 있게 추진한 대동법은 효종 9년 7월 호남에서도 실시되었다.[76] 그로부터 2개월 후에 김육은 임종을 맞았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대동법의 지속적인 실시를 건의했다. 전라도 대동법을 완수하기 위하여 유능한 徐必遠을 전라감사로 천거한다. 또한 전라도 대동미 수송의 안전을 위해 안면도에 창고를 설치하여 험한 뱃길을 육로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대신들의 찬동을 얻지 못하자, 사망하기 7일 전인 8월에 효종에게 올린 글에서 사람을 보내 물정과 형편을 자세히 살펴 올 참이라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김육은 일관된 자세로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여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민생의 안정과 국가재정의 회복을 위한 방책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대동법이란 해결책을 찾은 김육은 끊임없이 시행을 주장한 끝에 충청도와 전라도의 대동법 실시를 가능하게 했다.

2. 김육의 안민본위 변통론

김육의 대동법의 확대실시를 주장과 그러한 사상적 바탕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정치관료이며 경세학인으로서의 김육의 경륜과 신념의 뒷받침된 것이다. 그러나 시대상황에 대한 그의 대응논리가 큰 작용을 하였다.

김육은 양란을 겪은 국가사회의 위기와 민생의 파탄에 직면하여 붕당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나갔다. 다음은 김육에 사평이다.

사람됨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확실하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정성을 천성으로 타고나 일을 만나면 다하여 꺼리거나 두려운 일을 피하지 않았다. 燕京에 使臣으로 갔을 때 本國이 침범된 것을 듣고 밤낮으로 울었고, 이를 보고 중국인들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평생 經國濟民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고 政丞이 되서는 새로 시행한 일이 많았다. 忠淸 · 全羅의 大同法은 그가 건의한 것이다. 다만 자신감이 너

75) 『孝宗實錄』 권19, 8년 9월, 8일.
76) 『孝宗實錄』권19, 8년 9월, 21일.

무 지나쳐 대동법을 논의할 때, 金集과 의견이 맞지 않자, 김육은 불평을 품고 여러 차례 상소하여 金集을 공박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점으로 여겼다.[77]

김육에게 안민은 평생의 정치적 화두였다. 앞서 보았듯이 첫 벼슬부터 안민을 화두로 삼았는데, 그러나 당시 안민우선론은 소수의 의견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순리대로라면 안민을 통해 부국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지만 양란의 폐해로 재정복구가 시급한 상태로 안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지배층은 김육의 安民優先論을 安易하고 非現實的인 대책으로 생각했다. 지배층 대부분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동요로 인해 기존의 지배질서에 타격이 올 것에 대한 염려가 더욱 컸다.

그들은 淸議・大義 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 세력의 주장을 억압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구실로 삼았다. 당시 丁卯胡亂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兩西地方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더구나 사신의 행차가 지나가는 곳은 인부와 말을 대느라 민생은 파탄지경이었다. 또한 패전한 군사들을 조사하여 죄를 주거나 성을 쌓도록 하는 것도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집권세력은 스스로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군사훈련, 축성 등 온갖 빌미로 백성을 동원하여 사역하고, 조세를 부과했다.[78]

더구나 각 지역에서 주자학을 공부하는 '士類'로 자임하는 많은 '土豪'들은 집권세력의 '대의론'에 호응함으로서 기존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백성의 삶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79]

신이 크게 걱정하는 바는 단지 흉년에 백성들이 굶으며 인심은 흩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계획한다는 말이 한 마디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두세 가지 정책이 나오면 반드시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용합니다.[80]

---

77)『孝宗實錄』권20, 9年 9月 5일.
78)『仁祖實錄』권46, 23년 3월 23일.
79) 박병련, 「조선조 무실론의 전개양상과 김육의 정치사상」,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58.
80)『국역 잠곡유고』권2, 疏箚, 「論兩西事宜疎」

‘청의’나 ‘대의’가 국가의 존립이나 민생보다도 우선시되는 현상에 대해, 그는 우선 국가의 기본적 정책 목표로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주장하고, 국가를 튼튼히 하는 최우선의 정책은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김육은 이러한 인식하에 ‘休民論’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이 병란의 와중에서 많이 죽고 붙잡혀 갔으니, 이는 일단 국운의 불행이지만 임금과 관인들은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들을 구제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과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로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당장 시급한 것은 ‘人心收拾’이었고 이는 ‘重病에 걸렸던 사람이 몸조리하듯이 백성을 쉬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81] 그의 이와 같은 ‘休民論’은 그 무렵 호패법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나라에선 재정 복구와 유망민의 증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호패법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김육은 이미 준비된 군역 자원 병부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패어사를 파견해 엄하게 독촉할 경우 필연적으로 민심이 동요한다는 판단에서 일방적 통제와 처벌을 비판했다. 그는 ‘호패법을 혁파하고 그 성적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패를 달고 다니는 자에게 죄를 주자’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는 안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국왕의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 호란 때에 청에 볼모로 잡혀 갔다가 돌아와 왕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을 위해 軍備强化策을 추진한다. 그러나 김육에게 군비강화책은 안민을 방안이 아니라 농민을 괴롭히는 정책이었다. 그는 효종에게 三可畏說을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재앙이 되는 모든 일은 天에서 나온다고 말하지만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 可畏者가 셋이 있는데 天과 敵과 民이 그것이며 셋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民이라고 했다.

군비강화책은 국왕 자신이 힘써 추진하는 일이였으며, 당시 집권세력인 서인의 산림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서슴지 않았다.[82] 이러한 김육을 병조판서 元斗杓 (1593~1664)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81) 『국역 잠곡유고』 권2, 疏箚, 「論兩西事宜疎」
82) 李京燦, 「孝宗祖의 北伐運動」, 『淸溪史學』5, 청계사학회, 1988.

김육이 민심을 잃지 않는 것만 상책으로 알아서 성을 쌓거나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백성을 동원하는 일을 매양 잘못이라고 합니다.[83]

원두표는 효종과 김육이 현안에서 갈등이 깊어졌던 효종 4년 이후 줄곧 병조의 일을 맡아오던 인물이었다. 원두표의 비난에 대해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와 기능이 안민에 있으며 지배층의 도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안민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국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으며, 이룩된 부국도 민심을 잃는다면 견고한 城이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84]

김육의 '안민'에 대한 신념은 法令 또는 禁令에 대한 생각에도 닿아 있었다. '국가의 금령은 民心을 거스르지 않는 다음에야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85] 백성들의 생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민생의 기본을 다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엄한 강제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라면 그것은 조만간 죽은 법이 되어버릴 것이고 국가의 신뢰는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금령을 '防川을 쌓는 데 있어 水勢를 따라서 물길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였다.[86] 이와 더불어 그는 백성들의 강탈적인 수취를 감행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악역을 담당한 실무관리에게 상전의 위로를 함부로 베푸는 것을 경계했다.

백성들은 살이 발리고 골수가 뽑혔으며 工匠人들은 筋骨이 시달리고 지쳤는데, 감독자들은 직분이라면서 고작 그들에게 매질하고 호령해대는 것만으로 공로를 가만히 앉아서 챙기고 있습니다.[87]

국가의 상벌권의 남발은 결과적으로는 백성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국가에 대

83) 『孝宗實錄』권14, 6년 5월 13일.
84) 『孝宗實錄』권14, 6년 5월 13일.
85) 『국역 잠곡유고』 권7, 啓辭, 「請出米貿布 兼行賑救啓」
86) 『국역 잠곡유고』 권7, 啓辭, 「請出米貿布 兼行賑救啓」
87) 『국역 잠곡유고』 권7, 啓辭, 「請出米貿布 兼行賑救啓」

한 불신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육은 집요하게 안민을 추구했다. 이러한 주장이 71세 때 올린 「辭右議政疏」에 잘 드러나는데, 대동법이야말로 儒家 본래의 안민정신의 실천임을 새삼 강조했다.

臣은 심히 고루하여 감히 奇謀와 秘策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직 『書經』에서 말한 '庶民을 보살피고 보호하라'는 것과 『詩經』에서 말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구나'라는 것과 『論語』에서 말한 '쓰임새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과 『孟子』의 '和合만한 것이 없다'는 것과 『中庸』의 '庶民을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것과 『大學』의 '백성을 얻어야 나라를 얻는다'는 것을 만세토록 마땅히 행해야 할 도라고 여겨 다만 세금을 고르게 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만들고자 할 따름입니다.[88]

이러한 안민우선론과 대동법 확대에 백성들은 호응하였음은 물론이다. 실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백성들은 통상적에 대을 뛰어넘어 앞 다투어 부의를 전하고 全道에 통문을 돌려 비석을 세울 정도였다. 이런 사실을 工曹參判 閔應亨이 임금에게 진언하였다.

朝廷에서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가게 힘껏 실행한다면 백성들이 감격한 나머지 조정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살피건대 요즘 호서 백성들이 相臣 金堉의 葬事 소식을 듣고 부의 물품을 다투어 보냈지만 그 댁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道內에 통문을 돌려 道의 경계 위에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相臣이 남긴 은택도 잊지 못하거늘 하물며 국가가 백성들에게 베푼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이 어떻겠습니까?[89]

실제 대동법 논의가 반세기를 이어져 오던 1658년에 호서 지역의 백성들은 대동법 실시로 공납제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90] 또한 이를 기점으로 대동법 실시를 둘러싼 논의는 '찬반의 논란'을 종식하고 전국적 확대 실시의 단계로

88) 『국역 잠곡유고』, 권4, 疏箚, 「辭右議政疏」
89) 『孝宗實錄』 권20, 9년 9월 5일.
90) 정연식, 「湖西大同節目 서문에 보이는 金堉의 공리주의적 사고」, 『인문논총』16, 2007, p.193.

접어들었다. 이것은 오로지 안민을 우선하던 김육의 경세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김육의 경세사상은 부단한 경험에 기초한 무실론을 요체로 한다. 조선의 사상사 흐름은 크게 經世論과 名分論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조선전기 사상가들에게는 대체로 두 경향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중기 주자성리학의 전면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념적 名分論이 주류가 되고, 經世論 및 實務와 時務를 강조하는 務實論 경향은 약화되거나 '功利'적 범주로 취급하여 일류의 선비가 관심 둘 일이 아닌 부차적인 위치로 자리매김 되었다.

대체로 무실론은 실용과 실천을 강조하고, 실용과 실천은 백성을 위한 지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이론적 골격을 갖는데, 반드시 같은 당파나 동일한 내용을 갖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맹자의 民本論을 기초로 한 실천을 강조하기도 하고, 富國强兵論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실용적 경제와 이익을 우선하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며, 특수한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 현실론의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했다.[91]

3. 대동법의 성격과 조선후기 경세론의 분화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획기적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대동세에는 進上・貢物뿐만 아니라 徭役, 그리고 中央・地方政府가 징수하는 雜稅를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다 포괄하였다. 그래서 대동법에 규정된 외에 貢物・徭役・雜稅를 부과하지 않는 방침이 채택되었다. 또한 家戶를 대상으로 부과된 人頭稅적 성격을 탈피하여 수익의 원천인 토지를 과세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이 공평해졌다. 이는 종래에 富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호를 대상으로 공부와 역을 부과하는 전통적 租庸調 체제에 비교하면 진보된 형태로 中世的 조세제도로부터 벗어나 近代的 조세제도로 나아가는 動因이 되었다.

가장 폐단이 심각했던 防納人과 官吏의 중간 수탈을 막을 수 있는 점에서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입도 줄어들지 않았다. 현물로 받

91) 박병련, 「조선조 무실론의 전개양상과 김육의 정치사상」,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20.

는 대신 물품화폐와 동전으로 징수하는 대동법을 통해 정부는 세입의 수량적 파악을 진전시켜 수용물자의 조달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大同節目과 宣惠廳의 각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재정 기획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동법에 의하여 지방재정에도 豫算制度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대동법 이전에는 營邑에 토지를 분급하여 그 수익으로 지방관의 봉록과 제반경비에 쓰게 했고 그 밖에 地方貢物로 官需를 충당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 營邑의 제반 경비를 費目別로 계산 · 취합하여 장기세출예산을 편성하고, 收入計定에는 종래의 모든 과외잡세수입을 폐기하고 官屯田 수입과 정규수입만을 먼저 計上한 다음 부족한 경비를 대동유치미로 計給하여 장기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발전된 형태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92]

그리고 물품을 조정에 납품하는 공인이 시장에서 공물을 조달하면서 시장이 발달되었다. 매년 경외의 각급 관부에서 40만 섬에 상당하는 대동미 방출은 상업의 발달을 자극하여 생산부문에 교환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생산을 유발하였다. 대동법 자체가 교환경제의 일정한 발달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것은 교환경제의 발달을 촉진하고 또한 교환경제의 발달은 각 생산부문에 상품생산을 자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업의 발달은 수공업의 발달과 동전 통용의 성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 원동력이 되었다.[93]

英祖 46년(1770) 『東國文獻備考』가 편찬되고, 正祖 때에 그것이 추가, 증보되었으며, 1908년에 그것을 대폭 증보한 『增補文獻備考』가 간행되었는데, 그 경제 관련 기사가 시작되는 田賦考의 머리글에서 世宗의 공법이 중국 고增補이상에 부합한다고 보고, 대동법을 중국에도 자랑할 만한 성과로 행되했다.

우리 성조께서 국가를 세우자 맨 먼저 전부를 바로잡아, 경지에 6등급을 두고 등급에 따라 과세하였다. 대개 인민에게 가볍게 거둔 것 또한 삼대의 遺意였다. 공물을 토산물로 정하여 그 납부에 폐단이 점점 더 심해져서 모두 경지에 부과하여 섞어 내게 하였으니, 곧 대동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에 공과 부가 하나가 되어 인민의 부담이 석공 때에 비해 도리어 가벼워졌다. 이것은 성왕께서 농업과 이재에 힘써 인민을 부유하게

92) 金玉根, 「大同法硏究」,한국경영사학회, 1988, p105~109.
93) 이헌창, 「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업적」,『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197~199.

하신 방안이다.[94]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해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 세기에 달하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수구적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서 김육의 가장 집요하게 주장하여 대동법의 확대를 주장하고 관철하였다. 이로부터 대동법은 찬반의 시기를 지나 전국화의 시기로 이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학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인산림 즉 산당과 김육의 갈등 대립에 주목하였다. 산당은 이이에서 김장생, 김집,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통이 중심이었다.[95] 여기에서 김장생・김집・송시열 등의 주장은 先財用節減과 貢案改正을 주장하였다. 대동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인조 2년 6월 김장생은 萬言疏에서 '罷大同'을 주장하였으며, 김집은 山黨의 영수로서 많은 문인을 거느린 당시 정계의 핵심이었는데, 대동법으로 오히려 국가 재정이 위태로워지므로 대신에 공안개정을 백성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백성들의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것보다 국가의 재정회복에 더 무게를 둔 것이었다. 동시에 대동법의 편익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과대평가하였다.

송시열 또한 스승인 김집이 대동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김육을 공격하자 스승과 진퇴를 함께 할 것을 표명하며 김육을 비판했다.[96] 김육은 크게 좌절하여 낙향을 선택한다.[97] 이들이 대동법을 반대한 것은 이로 인한 양반사족 토호지주의 반발로 인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회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들 또한 당시 상황을 모르지 않았다.

다음은 김성일이 황해도 순무어사로 파견되었던 선조 16년(1583)의 상황이다. 전란 이전의 상황조차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

---

94) 이헌창, 「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업적」,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p.200.
95) 조성을, 「17세기 전반 서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7, 한국역사연구회, 1992, p63.
96) 『孝宗實錄』 권3, 1년 1월, 22일.
97) 『孝宗實錄』 권3, 1년 6월, 26일.

臣이 一道의 流亡人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각 읍에 명하여 그 사실을 보고토록 하였는데, 大邑은 수 백여 명에 이르며 小邑 또한 8, 90명 이하로 내려오지 않아 一道를 통틀어 보면 유망자가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읍에 8, 90명도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 사람마다 각각 九族이 있으니 그 침해를 당하는 자 또한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98]

한 사람이 逋亡하면 그 역이 九族에게 미치고, 구족이 감당하지 못하면 隣保에게 미치며, 인보로도 감당하지 못하면 마침내 族殄隣墟에 이르게 되어 전야에는 草萊가 우거져 있으나 그 賦稅는 오히려 남아있다.[99]

결국 부세를 견디지 못한 자영소농은 연체 및 도망하고 인징·족징으로 민생은 파탄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납과 방납인의 실태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던 실정이었다.

淸蜜 1두의 값은 布木 3匹인데 人情은 4필이며, 양 한 마리의 값은 포목 30필인데 인정은 30필이다.[100]

京中에 있는 各司의 下吏들이 외방의 貢物을 분점하는 것을 世業과 같이하여 什佰의 이익을 노리고 있다.[101]

당시 방납과 방납인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국가재정은 관료의 녹봉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호조에서 啓하기를 … 백관의 녹봉을 7품 이상은 각각 米 1석을 감하고, 8품은 미 1석을 감하는 대신 豆로 代給토록 하였는데, 지금 사대부들이 阻飢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두는 지급할 수 있으므로 청컨대 7품 이상에게 감한 미를 또한 두로써 대급토록 하십시오.[102]

---

98)『鶴峰全集』, 권2, 疏, 「黃海道巡撫時疏」
99)『鶴峰全集』, 권2, 疏, 「黃海道巡撫時疏」
100)『국역 잠곡유고』, 권6, 書狀, 「請行本道大同狀」
101)『西厓文集』, 권14, 雜著, 「貢物作米議」

이 계문을 국왕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당은 호패법을 통해 백성의 유망을 막아 사회혼란을 방지하자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호패법의 시행을 꺼려했으며 김육 역시 호패법을 안민에 역행하는 것으로 신랄하게 비난했고, 조익은 백성은 생업이 잘되고 곤고함이 없으면 옮겨가지 않는 법이며, 떠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 이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허위로 신고하는 자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며 호패법은 백성들의 저항으로 더 이상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임을 주장했다.[103]

이런 상황에서 김육은 김집 등의 주장과 달리 즉각 대동법의 실시를 주장하게 된다. 공납은 호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당시 상황에서 공안개정(本色上納)에 의한 호별 균분수취는 아무리 그 의도가 부세의 균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해도 담세능력을 상실한 소민들에게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방납의 폐단이 갖는 문제 핵심인 본색상납을 지양하려 했던 대동법 초기 논의의 핵심을 비켜난 주장이었다.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은 이미 임토작공의 원칙을 바꿔야 하는 시기에 진입해 있었다. 그래서 현물이 아닌 米 · 布를 수단으로 하는 대동법 실시가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대동법은 戶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전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인조 12년 "甲戌量田"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영세한 소민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더불어 방납의 폐단은 대폭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공납제 왜곡에 따른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고 균역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세원을 담세 능력이 있는 유전자 혹은 지주에게서 찾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대동법의 실행을 김육은 늦추거나, 공안개정론에 양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동법 실시와 관련한 김육과 산림의 마찰은 본질적으로 개혁과제에 대한 인식차로 보인다. 김집이 효종 초 徵召되어 올린 封事의 핵심 내용은 '人主之一心

102) 『孝宗實錄』 권6, 2년 3월, 26일.
103) 金潤坤, 「大同法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배경」, 『大同文化硏究』8, 1971, pp.33~36.

萬化之源'이라는 근본론과 當今急務로서의 시무책 6조인데, 시무 6조 내용의 핵심도 근본론을 보다 세세히 설명하는 내용이다.[104] 전반적으로 왕 초기의 정책 대강에 대한 피력으로 보아진다.

김집이 연산으로 돌아가 지은 상소에서 "김육과 대동법의 議論이 不合하다 하여 一場의 惹鬧가 있었다"라고 표현한데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각론의 차이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105] 대동법 실시의 강력한 반대론자였던 송시열도 효종이 호서대동 실시에 대한 반응을 묻자 "호서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편리하게 여기는 자가 많으니 좋은 법"이라고 하였다.[106] 나아가 현종 즉위년(1659) 전라도 산군의 대동법 실시를 직접 건의한다.[107]

대동법을 둘러싼 서인산림과 김육의 마찰은 기실은 대동법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문제로 대별되는 국왕권에 대한 인식차이가 보다 중요한 쟁점 이였다고 생각한다.

인조 때의 정국은 공신 계열이 주도했다. 공신 세력과 官僚群이 포진한 가운데 즉위한 효종은 김집, 송시열 등 산림계 인사를 대거 불러들이고 기성 관료군에서 김육을 재상으로 중용했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효종이 국정의 운영에는 조정을 도덕적으로 기강을 확립하는 과제와 경세정책을 추진하는 과제가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산림계 인사는 전자에 기성 관료군은 후자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산당은 효종이 구상하던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기성 관료와 충돌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고자 했다. 정국의 논의를 대의명분과 예론을 중심으로 이끌고자 했자 했자김육의 대동법 건의를 반대함으로써 그들이 취약했던 경세 정책에서도 관료와 대립했다. 나아가 그들은 군주의 인사권까지 도전했다. 節次擢用의 주장이 그것이며, 이때에 효종은 김육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여기에서 본래 산당의 뿌리는 이이가 대동수미법을 제창하고 서인의 거두 정

---

104) 韓基範, 「愼獨齋 金集의 生涯와 禮思想」, 『백제연구』1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8, p,353-354.
105) 韓基範, 「愼獨齋 金集의 生涯와 禮思想」, 『백제연구』1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8, p,354.
106) 『孝宗實錄』권19, 8년 9월, 21일.
107) 『顯宗實錄』 권1, 즉위년 9월, 3일.

철 또한 그러한 입장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08] 효종 원년(1651) 산당과 척화파의 거장인 金尙憲도 대동법의 실시를 주장하는 李慶嚴의 제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동법의 선결과제를 먼조 거론하였다. 그렇지 않으며 대동법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동법을 반대하지 않고 예상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것이다.[109]

그렇듯 원칙적으로 대동법에 대한 찬성은 김장생 김집으로 이어지는 서인 산림계의 공식적인 견해였다. 호서대동법의 괄목할 성과로 인해 산당은 대동법의 지지로 입장을 전환하여 1662년 전라도 산군에서 큰 어려움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게 된다. 결국 1677년에는 경상도민이 대동법의 실시를 갈망한다는 상주가 올라와 대동법이 경상도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110]

그런 맥락에서 소극적이었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며, 兩宋으로 대표되는 서인 산림이 본격적으로 공론을 주도하고 정국을 이끌었던 현종 이후 대동법은 찬반논란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반면 그 확대 실시와 제도적 안착의 양상이 이어지며 결국 숙종 치세에 전국적 실시를 보게 되었다.

이상 사건의 전말을 비교해 보았을 때 김육과 호서 산림의 갈등은 인사문제를 매개로 비롯된 국왕권에 대한 시각차로 파악된다.[111] 이것은 김육의 마지막 상소에 대한 의미 해석에서 확연해 진다.

김육 사상에 대한 논의 일각에서 김육이 말년에 安民의 축을 서서히 富國으로 옮겼다는 주장을 발견하게 된다. 또 마지막 상소를 예로 들면서 김육이 산림의 중심 관점인 산림의성림의정심에 대한 강조에 접근해 갔음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육의 생애를 굳이 출생과 가계, 사상 연원을 밝히고 더하여 당시 시대전반의 요소들의 면면을 거론하면 할수록 이러한 의견이 김육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108) 오항녕, 「17세기 전반 서인산림의 사상」, 『역사와 현실』8, 1992, p,55.
109) 『孝宗實錄』 권1, 즉위년 7월, 11일
110) 각 지방의 실시 연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광해군 즉위년(1608), 강원도-인조 원년(1623), 충청도-효종 2년(1651), 전라도해읍-효종 8년(1657), 전라도산군-현종 7년(1623), 경상도-숙종 3년(1677), 황해도-숙종 34년(1708).
111) 『孝宗實錄』 권1, 즉위년 6월, 16일: 권1, 즉위년 6월, 22일.

그는 유서와도 같은 글을 효종에게 올리면서 군주의 제일 덕목에 대해 성의정심을 거론하며, 효종 국정전반에 대한 완곡한 평가와 세자의 교육을 맡을 인사로 송시열을 추천 한다. 이어서 전라대동법의 담당자로서 서필원을 천거한다.[112]

김육은 효종의 재위기간 동안 대부분 국정을 담당한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효종의 정국운영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도 이해의 수준이 높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가 글의 전반부에 군주의 심학을 강조한 것은 효종의 독단적 정국운영이 가져올 파장을 염려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안민이 부국으로 중심이동을 했다거나, 서인의 정책방향에 근접해서 나온 급격한 심경변화에 기인했던 것이 아니다.

효종이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병권장악과 그에 이어 추진한 군사정책은 속오군 편성과 영장 복설, 노비추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지지를 상실했다. 심지어 강빈신원 문제로 올린 김홍욱의 應旨上疎에 대한 처분이 김홍욱의 杖殺로 이어지면서 공론의 거센 반발에 따라 효종은 주도적인 정국운영능력을 상실하였다.[113]

효종은 부국강병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국가재정을 축내고 민생 안정을 해치는 가운데, 1656년 초부터 재변이 끊임없이 일어나 재정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민심은 소란스러워지자 자탄하였다. “한 마음으로 다스려지기를 구하여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공들인 효과는 더욱 까마득하고 날로 위태롭고 어지러워지기만 한다.”[114]

당시 여론의 이반 상황을 누구보다 염려했던 김육은 이의 회복을 위해 효종에게 心學에 대한 부분을 피력했으며, 제도적 안정을 위해 공론주도 세력인 호서 산림인사의 천거까지도 면밀히 고려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대동법의 진행 추이와 더불어 서필원을 명시하며 담당자의 추천까지 거론한 것에서 다시 확인된다. 즉 대동법의 제도적 안정과 확대 실시 나아가 전국적 확대를 염원했던 김육은 효종과 공론 주도 세력까지도 대동법의 확고한 실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의도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

112)『국역 잠곡유고』권6,「病欲進言以終遺意箚」
113)『孝宗實錄』권12, 5년 6월, 17일: 7년 2월, 5일: 7년 2월, 7일.
114)『孝宗實錄』권19, 8년 11월 2일.

실로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대동법의 실시로 백성들의 현실을 구제하려 했던 경세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으로 생각건대 김육의 생애는 실로 확고부동, 초지일관 자체였다.

김육은 기묘사림 및 성혼, 백인걸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며 의리론에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조호익의 漢代 학풍과 윤근수의 秦漢고문론 등 17세기 전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유행하던 다양한 사조의 세례를 받은 학자의 풍모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김육은 주자 성리학에 대한 소양이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 율곡 이후 성행했던 理氣心性說과 같은 이론 논쟁에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성리학의 인식론에 연연하지 않고 경세의 실천이념에 유용한 다양한 사상을 개방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다른 성리학자와 달리 학통과 세평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기 견해에 충실했다. 또한 경세론의 독자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기에 못지않게 중시했다. 「湖西大同節目序」에서 학문의 존재이유는 오직 實이며, 그 실질적 해택은 安民으로 이어지고, 실과 안민은 儒家 본래의 안민임을 제창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辭右議政疏」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실이다. 불혹을 넘긴 늦은 출사에도 불구하고 은퇴하기까지 그의 정치적 화두는 오로지 '민생의 안정', '안민'에 있었다.

김육은 참혹한 조선의 현실에서 경세가를 자처하며 '恐懼修省'의 소극적 자세를 부인한다. 대신 '誠以動之 敬以行之 施於政事'라며 실제적 대안을 제시한다.[115] 天災로 질식할 참담한 현실에서도 경전의 교조적 해석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던 당시에, 誠意 · 正心의 적극적 해석은 모름지기 誠動 · 敬行으로 읽혀야 함을 그는 알았다할 것이다. 그러한 경세관료 김육에게 안민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다.[116]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김육에게 明德과 新民, 至止善은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대동법의 확대실시와 추진과정에서 三綱領을 실천으로 구현한

115) 『국역 잠곡유고』 권5, 소차 「論營將煮焰之弊仍乞致仕箚」
116) 필자는 이점에서 김육의 사상을 서양 공리주의와 유사하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다. 그리하여 하늘까지 감동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朝鮮國領議政金公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 ‘領議政金公堉輕徭保民仁德不忘碑’, ‘相國金公堉永世不忘碑’ 이상의 선정비는 김육이 죽은 후 1, 2년 뒤에 경기도 평택, 충청남도 아산, 전라북도 익산 등에 세워졌다.[117] 김육의 선정비는 고을 수령의 선정비가 아니고 중앙정계에서 정책을 추진한 인물에 대한 선정비였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한 것이다.

117) 정연식, 「湖西大同節目 서문에 보이는 金堉의 공리주의적 사고」, 『인문논총』16, 2007, p,193.

Ⅳ. 맺음말

잠곡 김육이 살아간 17세기 조선사회는 임진왜란 · 정묘호란 · 병자호란의 연이은 전란으로 국가 재정은 몰락하고 농민의 삶은 황폐해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 공납제도의 폐단까지 가중되어 위기감은 더해갔다.

공납제도에서 발생한 방납의 폐단은 부정 관리의 배만 채울 뿐 백성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궁핍하게 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육의 전 시기를 살았던 율곡의 말을 옮길 때 실로 당시는 경장의 시대였다.

그러나 경장이라는 개혁의 시기는 개혁의 방안으로서 대동법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함으로 하여 인조 · 효종 때에 이르기 까지 반세기를 넘겨 찬 · 반, 치 · 폐를 거듭하는 혼란만 되풀이 하던 실정이었다. 여기에 단호히 실행의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 바로 김육이다.

조선의 사상사적 흐름은 크게 경세론적 경향과 명분론적 경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대체로 무실론은 실용과 실천을 강조하고, 실용과 실천은 백성을 위한 지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이론적 골격을 갖는데, 반드시 같은 당파나 동일한 내용을 갖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맹자적 민본론을 기초로 한 실천을 강조하기도 하고, 부국강병론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실용적 경제와 이익론을 배경으로 하기도 하며, 특수한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 현실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육은 4차례에 걸쳐, 그것도 명말청초의 격변기에 중국의 사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많은 자극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중국 사행을 통해 당시 식자 · 관인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폭넓은 시야와 국제적 감각,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닐 수 있었다. 그리하여 주자학자 일반의 완고하고 편협한 인식태도와는 사뭇 다른 자세로 자신의 삶과 관인으로서의 입장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실사 · 실용을 중요시하는 인식과 실천의 태도였다.

김육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이 '實'을 바탕으로 하였다. '실'은 양란의 참혹상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인 동시에 스스로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명분에

매달리는 당시의 집권층에 대한 불신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김육에게 '실'은 국익과 안민을 위하는 것이었다. 백성의 생활을 제약하고 불편하게 하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명분은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로인해 무실론은 그의 정치적 신념이 되었고, 구체적 정책 방향은 '均役'을 통한 '安民'으로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것이었다. 김육은 우선 국가의 기본적 정책 목표로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주장하고, 국가를 튼튼히 하는 최우선의 정책은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와 기능이 안민에 있으며 지배층의 도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안민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국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자 정치이념이었다. 안민우선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실용적 정책 구현에 힘썼는데 그 중에서 대동법 시행은 그의 평생의 신념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안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일반 백성들은 큰 호응과 지지를 보냈다.

김육은 효종 때에 재상의 지위에 오르면서 왕의 신임과 후원을 얻어 정책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의 정책구현 활동 중 평생의 신념과 정치 과업으로 삼은 것이 있다면 단연코 大同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육이 주장한 대동법의 가시적인 성과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나타났다. 이것은 김육의 慧眼이 깊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가 경제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동법은 조선시대 조세제도 가운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동세에는 과외 잡세를 대부분 포괄하였다. 둘째, 인두세적 성격을 탈피하여 수익의 원천인 토지를 課稅基準으로 삼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이 공평해졌다. 셋째, 가장 폐단이 심각했던 방납인과 관리의 중간 수탈을 막을 수 있었다. 넷째 재정 기획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다섯째, 지방 재정에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여섯째, 물품을 조정에 납품하는 공인이 시장에서 공물을 조달하면서 시장이 발달한다. 일곱째, 상업의 발달은 수공업의 발달과 동전 통용의 성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던 이유는 임토작공의 전통적 이념, 경제적 여건의 미비, 호강층의 반대, 정책논의 과정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

대동법 실시의 반대론 모두가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위정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심하게 대립하였는데 이를 두고 인조 · 효종 년간을 '대동법 논쟁의 시대'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 치열했다.

반대론자들은 대동법 실시를 반대하면서 공물제도의 개혁으로 혹시 야기될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동법의 편익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과대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광해군 때부터 치 · 폐를 거듭한 대동법은 소빙기라는 자연재해와 잇단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반대론에 부딪혀 사대동 · 반대동으로 왜곡되어 시행 초기 의도했던 공납제 개혁의 의미마저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1651년 8월 마침내 김육의 주장으로 湖西 大同法이 시행되었다. 제도개혁을 통해 안민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효종대에 들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가 끈기 있게 추진한 대동법은 효종 9년 7월 호남 지역에서도 실시되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에 김육은 임종을 맞았다.

김육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것을 흡수하였지만, 산당 등 성리학 근본주의자와는 학풍을 크게 달리 하였다. 김육은 경세론의 독자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기에 못지않게 중시했다. 학통과 세평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기 견해에 충실한 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개방적 태도로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직접 겪은 경험을 더해 안민과 실을 정치사상의 기본으로 삼아 평생 경국제민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김육은 일관된 자세로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여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백성의 안정과 국가재정의 회복을 위한 방책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대동법이란 해결책을 찾은 김육은 그것의 시행을 끊임없이 주장한 끝에 충청도와 전라도의 대동법 실시를 가능하게 했다. 그가 필생의 사명으로 추진했던 대동법의 확

대 시행은 공납제 폐단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표면적 의의뿐만이 아니다. 이는 고려시대 이후 지속된 조세제도상 봉건성의 극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의 변화와 요청에 부응했던 김육의 경세사상 기저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先修己後治人'이라는 유학 나아가 주자성리학의 기본이념을 벗어난 적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가 務實과 변통의 근거로 내세운 안민 또한 공맹 이래 유학이 추구하는 정치의 목표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점이 김육의 사상적 위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조선초 정도전의 개혁설과 이후 이이의 그것은 양반 중심의 전근대적 봉건체제를 확립하는 성격과 그것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되고 논의되었다. 그로부터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체제가 16세기를 고비로 여러 모순을 드러냄에 따라 그 모순의 개선 개혁을 꾀하는 의지에서 실학이 발흥하게 된다.[118]

더 나아가 임란과 양차의 호란은 조선의 모순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대응책의 모색은 탈 성리학적 성향까지 지니는 실학을 낳게 했다. 바로 그 지점에 김육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정도전과 이이로 이어지는 전기 실학의 결과로서 그리고 후기실학의 선구적 위치에 해당한다.

118) 윤사순,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삼인, 2000, p,38-39.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국역 잠곡유고』
『眉巖集』
『白軒集』
『蒲渚集』
『黨議通略』

2. 단행본

김태영,『조선성리학의 역사상』, 경희대학교출판국, 2006.
박병련 외,『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이종범,『사림열전 1』, 아침이슬, 2006.
이종호,『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한길사, 2004.
韓國史硏究會 編,『韓國史硏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3.논저

강명관,「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대동문화연구소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고석규,「16·17세기 貢納制 개혁의 방향」,『韓國史論』12, 서울대 국사학과, 1985.
곽 진,「金堉 漢詩의 憂國意識과 處士的 情調」,『잠곡 김육연구』, 태학사,

2007.
김세봉,「金堉의 社會經濟政策硏究」,『史學志』21, 단국대, 1988.
_____,「金集의 生涯와 政治思想」,『東洋古典硏究』2, 1994.
_____,「仁祖·孝宗代 山人勢力의 形成과 進出」,『東洋學』24, 1994.
김준석, 「金堉의 安民經濟論과 大同法」, 『民族文化』24, 민족문화추진회, 2001.
김준태,「잠곡 김육의 실용적 경세사상 연구」,『儒敎思想硏究』31, 한국유교학회, 2008.
김호일,「經世家로서의 金堉」,『한국학』21, 중앙대, 1979.
김윤곤,「大同法의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背景」,『大同文化硏究』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1.
남윤수,「潛谷 金堉의 集杜詩考」,『중어중문학』4, 1984.
남은경,「潛谷 金堉文學의 特性硏究」,『한문교육연구』24, 2005.
박병련,「朝鮮朝 務實論의 전개양상과 金堉의 政治思想」,『잠곡 김육연구』, 태학사, 2007.
박희병,「신흠의 학문과 그 사상사적 위치」,『민족문화』20, 민족문화추진회, 1997.
배우성,「17세기 정책논의구조와 김육의 사회경제정책관」,『민족문화』24, 민족문화추진회, 2001.
_____,「사회경제정책 논의의 정치적 성격」,『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2003.
송웅섭,「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韓國史論』45, 2001.
안병욱,「조선후기 大同論의 수용과 형성」,『역사와 현실』47, 한국역사연구회, 2003.
오항녕,「17세기 전반 서인산림의 사상」,『역사와 현실』8, 1992.
오항녕,「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泰東古典硏究』9, 2004.
오미일,「18·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韓國史論』14,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우경섭,「潛谷 金堉의 學風과 時勢認識」,『韓國文化』3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

소, 2004.
원유한,「潛谷 金堉의 貨幣經濟思想」,『弘大論叢』11, 1979.
이경찬,「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淸溪史學』5, 1988.
이근호,「효종대 집권서인의 부세제도 변통론 정국의 추이와 관련하여」,『북악사론』3, 1993.
이남복,「金堉의 思想과 그 歷史的 位置」,『史學志』14, 단국대, 1980.
_____,「국역 잠곡유고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1998.
이영춘,「丙子胡亂 전후의 朝鮮·明·淸 관계와 金堉의 朝京日錄」,『朝鮮時代史學報』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_____,「17세기 朝鮮 정치사에서 金堉과 그의 가문」,『잠곡 김육연구』, 태학사, 2007.
이정길,「17세기 朝鮮의 貢納制 改革論議와 大同法의 成立」,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4.
이정철,「仁祖 初 三道大同法 論議와 經過」,『韓國史硏究』121, 2000.
_____,「丁卯胡亂 後 仁祖代 貢物變通 논의」,『史叢』56, 2003.
_____,「大同 米・布의 構成」,『韓國史學報』19, 2005.
이종묵,「潛谷 金堉의 삶과 詩世界」,『한국한시작가연구』9, 2005.
이헌창,「김육의 경제사상과 경제적 업적」,『문헌과해석』18, 문헌과해석사, 2002.
_____,「金堉의 경제사상」,『韓國人物史硏究』6, 2006.
장숙필,「잠곡 경제설의 사상적 토대」,『한국인물사연구』6, 2006.
정만조,「17세기 중반 漢黨의 政治活動과 國政運營論」,『韓國文化』2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9.
정선용,「潛谷詩에 나타난 憂國과 愛民意識」,『민족문화』24, 민족문화추진회, 2007.
정연식,「17세기 김육의 淸 문물 도입론」,『인문논총』11, 2002.
_____,「湖西大同節目 서문에 보이는 金堉의 공리주의적 사고」,『인문논총』16, 2007.

지두환, 「宣祖·光海君代 大同法 論議」, 『韓國學論叢』19, 국민대, 1996.
_____, 「仁祖代의 大同法 논의」, 『歷史學報』155, 1997.
_____, 「同春堂 宋浚吉의 社會經濟思想」, 『韓國思想과 文化』22, 2003.
_____, 「沙溪 金長生의 經世思想」, 『儒敎思想硏究』19, 2003.
_____, 「尤庵 宋時烈의 經世思想」, 『韓國思想과 文化』42, 2008.
차문섭, 「朝鮮朝 孝宗의 軍備擴充」, 『단국대학교 논문집』1, 단국대학교, 1967.
최완기, 「大同法 實施의 影響」, 『國史館論叢』12, 1990.
한영국, 「湖西에 實施된 大同法」, 『歷史學報』13, 1960.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사학과	학 번	20048055	과 정	석사, 박사
성 명	한글:정진우 한문 :鄭鎭雨 영문 :Jin-Woo, Jo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한국 @ 101동 203호				
연락처	E-MAIL : jamgok1658 @ naver.net				
논문 제목	한글 :잠곡 김육의 변통론과 대동법 영어 :Jamgok Kim Yuk's Reformist Theory and Daedongbeop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0년 7월 일

저작자: 정진우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